

제410회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 4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3년11월21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사기방지 기본법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2)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3)
3.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2)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08)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09)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6)
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4)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3)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4)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4)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85)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66)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8)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5)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8)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35)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3)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0)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2)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3)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1)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3)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0)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9)
25.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72)
26.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4)
2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512)
2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7)
29.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5)
3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7)
3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7)
3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9)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3)

3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2)
35.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9)
3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6)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1)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5)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1)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7)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81)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8)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4)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7)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9)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3)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69)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7)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9)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8)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06)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0)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49)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01)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54)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7)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0)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66)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48)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7)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03)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0)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5)
6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0)
6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45)
66.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35)
6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75)
68.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34)
6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6)
7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4)
7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9)
7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56)
73.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8)
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2)
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6)
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3)
7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5)

7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3)
7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37)
8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2)
8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2)
8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71)
83.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4)
8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0)
8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6)
8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4)
8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29)
8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49)
8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6)
9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3)
9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5)

상정된 안건

1. 사기방지 기본법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2) 5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3) 5
3.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2) 5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08) 5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09) 5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6) 5
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4) 5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3) 5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4) 5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4) 5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85) 5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66) 5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8) 5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5) 5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8) 5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35) 5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3) 5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0) 6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2) 6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3) 6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1) 6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3) 6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0) 6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9) 6
25.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72) ... 6
26.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4) ... 6
2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512) ... 6
2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7) 6

29.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5)	6
3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7)	6
3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7)	6
3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9)	6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3)	6
3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2)	6
3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9)	6
3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6)	6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1)	6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5)	6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1)	6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7)	6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81)	6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8)	6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4)	6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7)	6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9)	6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3)	6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69)	6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7)	6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9)	6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8)	6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06)	6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0)	6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49)	6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01)	6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54)	6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7)	6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0)	6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66)	6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48)	6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7)	6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03)	6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0)	7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5)	7
6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0)	7
6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45)	7
66.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35)	7
6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75)	7
68.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34)	7
6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6)	7
7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4)	7
7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9)	7
7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56)	7

73.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8)	7
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2)	7
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6)	7
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3)	7
7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5)	7
7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3)	7
7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37)	7
8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2)	7
8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2)	7
8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71)	7
83.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4)	7
8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0)	7
8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6)	7
86. 소방공무원 보건의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4)	7
8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29)	7
8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49)	7
8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6)	7
9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3)	7
9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5)	7

(10시14분 개의)

○소위원장 김용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찰청, 소방청과 중앙선관위 소관 법률안 91건입니다.

안건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찰청, 소방청, 선관위 순으로 심사할 예정이고, 각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1. 사기방지 기본법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2)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3)
3.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2)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08)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09)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6)

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4)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3)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4)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4)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85)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66)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8)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5)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8)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35)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

- 발의)(의안번호 2105793)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630)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1372)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1773)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151)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153)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230)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119)
25. 경찰공무원 보건의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72)
26. 경찰공무원 보건의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4)
2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120512)
2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7)
29.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5)
3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7)
3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7)
3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3359)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3)
3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2)
3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9)
3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6)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651)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315)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021)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977)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281)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0398)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864)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667)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109)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413)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0469)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0897)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1939)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388)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706)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3510)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249)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801)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054)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687)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730)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666)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848)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5037)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203)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780)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845)
6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0)
6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45)
66.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35)
6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75)
68.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134)
6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6)
7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4)
7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339)
7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556)
73.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8)
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152)
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726)
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1053)
7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3615)
7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3)
7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37)
8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2)
8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2)
8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71)
83.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844)

8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0)
8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6)
8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4)
8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29)
8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249)
8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6)
9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3)
9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5)

○소위원장 김용판 의사일정 제1항 사기방지 기본법안부터 의사일정 제91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9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경찰청에서 조지호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조지호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은 지난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사기방지 기본법안 제정안과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입니다.

입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감사합니다.

곧바로 안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기방지 기본법안에 대해 지난 소위 심사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규찬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기방지 기본법안 소위 자료를 일단 봐 주시기요.

2023년 11월 14일 지난 법안2소위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의사 합치를 이루지 못하고 오늘 계속 심사하기로 했던 경과가 있습니다. 이후에 경찰청과 관계 의원실이 논의를 한 결과 재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소위 자료 바로 뒤에 재수정안이 있습니다. 사기방지 기본법안 재수정안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넘겨서 2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내용 관련인데요, 사기통합신고대응원장의 직급과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의 정원을 법률에서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원은 60인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7조가 되겠습니다.

사기 관련 정보수집 방법 중에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는 방식은 제외하고 ‘피해자’를 ‘피해자 등’으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고발의 주체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포함되므로 피해자 등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의 2항은 수정안과 달라지는 내용이 통보 내용 중 사기범죄 관련 고소·고발·신고 등이 접수된 내용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고소·고발·신고 등 접수를 받은 경우 해당 접수 내용을 사기통합신고대응원으로 통보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바로 밑의 제8조입니다. 제8조는 사기범죄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긴급 지급정지 요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권한 남용의 우려를 반영해서 사기범죄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긴급 지급정지 요청권한을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도 권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임시조치 대상을 사기통합신고대응원에 접수되는 사기 관련 고소·고발·신고로 제한하고 또 긴급성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의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고’에 ‘긴급한 경우’를 추가했고 그 밑에 금융회사에 대한 근거 법률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조지호 지난번 소위에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한 재수정안을 전문위원실과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이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엄청나게 수정이 됐네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환 위원 오영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조정돼서 재수정안에 잘 담긴 거 같습니다.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또 권한 오·남용 우려가 있는 부분들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 주신 거 같아서 본 위원은 재수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임호선 위원 임호선 위원입니다.

차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통합신고대응원장의 여러 가지 권한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독립관청으로서의 지위에 해당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경찰청차장 조지호 예, 일부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조지호 예.

○임호선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청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독립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경찰청장 또는 국수본부장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국수본부장 산하로 둘 겁니까, 아니면 경찰청장 산하로 둘 겁니까?

그리고 대외적인 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요청권이라든지 통보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독립관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조지호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보조기관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조지호 이것은 일단 재수정안 쪽으로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60인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또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한과 관련해서도 대통령령이나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찰청 소속의 보조기관으로 인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 법률상에 나와 있는 권

한에 대해서는 대응원장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경찰청의 보조기관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오영환 위원 예, 의결하시지요.

○천준호 위원 잠깐만요.

저는 법안을 보면 볼수록 이렇게 중대한 법안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되거든요.

저는 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잘 검토하고 의견도 묻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난번 법안심사 때 이게 그냥 통과됐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법안이 살아나기가 오히려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들어서 수정도 하시고 보완도 하면서 저는 이 법안이 지난번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법안에 대한 우려나 걱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전히 드는 생각이 과연 이 법이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존재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경찰청 직제 내부의 부서로 해도 지금의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별도의 독립적인 법안으로 가야 되는 이유나 명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을 위해서라도.

○경찰청차장 조지호 통합신고대응원은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상 일부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찰청에 소속된 보조기관으로 인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지위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기범죄의 행태를 보면, 현황들을 보면 사기범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방하고 교육하고 수사에 활용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같은 사기범죄라 하더라도, 형법상의 같은 조문이 의율된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일대일로 만나서 개인대 개인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조직을 두고 사기행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대응도 체계적이지 않으면 범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이 이 제정안에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제정안이 제출됐을 때보다는 오 위원님 지적대로 많이 다듬어지고 정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준호 위원 법안 7조에 보면, 재수정안 기준으로 보면 7조지요, 사기범죄 등에 대한 정보수집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고소·고발·신고 등을 접수받는 방식으로 사기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 ‘등’이 고소·고발·신고만을 사례로 드는 것인지, 기타의 의미로 쓰시는 ‘등’인지, 열거의 ‘등’인지 그것을 좀……

○경찰청차장 조지호 보통 일반적으로 법조문에서 ‘등’은 앞에 나열한 내용과 유사한 수준의 내용으로 읽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천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있는 건데요.

○경찰청차장 조지호 그런데 그것은 딱 한정해서 하면 여러 가지 모든 현상들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법조문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 양식이라고 봅니다.

○천준호 위원 하여간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행정기관입니까, 수사기관입니까?

○경찰청차장 조지호 행정기관입니다.

○천준호 위원 그리고 수사를 의뢰하는 거고요?

○경찰청차장 조지호 그렇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런데 조직은 경찰청 산하에 있고 국가수사본부에 의뢰하는 개념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경찰청차장 조지호 예.

○천준호 위원 어쨌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보완이 되기는 했지만 영장을 통해서 경찰이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우회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것은 분명하다고 보시지요?

○경찰청차장 조지호 영장의 예외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천준호 위원 거의 사라졌습니까, 지금은?

○경찰청차장 조지호 예.

○소위원장 김용판 완전히 사라졌지요, 이 법안에서는.

○천준호 위원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사라졌다고 봅니까?

○**경찰청차장 조지호** 정말 필요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7조에 수집 대상도 정해져 있고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장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정도면 범죄정보에 있어서는 필요 최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관** 말씀 끝났습니까?

○**천준호 위원** 예.

○**소위원장 김용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떠나서 발의자로서 이 법안을 생각하게 된 기본적인 동기는 저도 경찰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사기에 제대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서울경찰청장 할 때는 굉장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많은 유관부처와 같이 법은 안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기 방지가, 특히 날이 갈수록 중요한 이런 다중범죄는 국제간에 걸쳐 있는 법이 거의 칠팔십 %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제회의에 가더라도 조치할 만한 그런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이런 통합 신고시스템을 갖춰야만이 정말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피해자에 도움 된다 그런 취지로 만든 법안인데 의지가 앞서다 보니까 제가 초안에 넣은 것은 인권을 걱정하는 분들이 바라볼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삭제가 됐고 특히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가지고 오히려 앞으로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법안에 반대 없는 것으로 알고 일단 의결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사기방지 기본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에 대해 전문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규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총괄검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은 전체적으로 현행 도로교통법 제11장의 내용을 분리해서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도로교통공단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범위 관련입니다.

이 조항에는 기존의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등 기존 도로교통법에 있는 내용을 규정함과 아울러 신규로 재난안전에 관한 방송 및 홍보, 사고 잦은 곳 개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것들은 이미 공단에서 수행 중인 사업이거나 급변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의 범위와 관련해서 제6조에 사업 관련해서 쪽 나오는 내용 중 ‘도로교통안전’을 ‘교통안전’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와 동일하거나 중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과 같이 ‘교통안전’을 ‘도로교통안전’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도로교통안전’을 제정안에서 ‘교통안전’등으로 고치는 사항을 ‘도로교통안전’으로 복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의 공단·공사에 관련해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자료제공 요청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공단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도 역시 다른 공단·공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부칙입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시행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이만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을 만약에 공포 후 1년으로 한다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조지호 제정안을 통해서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제정안의 전체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6쪽에 보고드린 현행 도로교통법과 같이 ‘도로교통안전’으로 규정하는 것이 ‘교통안전’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도 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선 위원 임호선 위원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을 별도로, 도로교통법에서 분리해서 별도의 공단법을 만드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이 법이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안을 전제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후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공청회도 그렇고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현행 도로교통법 중에 공단 관련된 조문을 별도로 수정하는 건 수정하는 대로 두고 나머지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서, 다른 일부개정안들이 지금 많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영환 위원 오영환 위원입니다.

공청회 당시에 교통안전공단과의 업무중복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 또 변화하는 교통환경상에서 또 변화하는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도로의 환경변화 속에서 좀 더 전문성 있게 높아진 위상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거에 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안 논의가 끝난 뒤에 이 법이 어차피 같이 시행돼야 된다면 부칙에, 만약에 오늘 이 도로교통공단법안이 의결되더라도 부칙을 더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규찬 예.

○소위원장 김용판 전문위원, 이야기 좀 하세요.

○전문위원 박규찬 지금은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하고가 같이 연계되어 있는 법입니다.

이만희 의원님께서 내셨는데 원칙적으로는 2개 조항이, 기존 도로교통법에서 도로교통공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또 조문도 정리하면서 도로교통공단법안을 만드는 건데 만약에 두 가지가 꼭 한꺼번에 갈 수 없다면 도로교통공단법안은 우선 처리하고, 그러면 공단법안 부칙에서 도로교통법의 도로교통공단에 관한 부분만 삭제하는 거지요.

그걸 먼저 가고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좀 더 계류시킨 상태에서 심사하는 것도 방법은 될 수가 있겠는데 발의하신 이만희 의원님께서도 의견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이만희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저도 전문위원 의견에 많이 동의합니다.

어쨌든 바로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일부 다루어지니까 이 중에서 전체 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한다면 일단 도로교통공단에 관한 법률안들을 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그럼 일단 보류하고 전문위원, 이것 보도록 하지요.

○이만희 위원 바로 뒤에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규찬 그러면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일단 오늘 여기서 더 심사는 안 하시는 걸로……

설명은 좀 들어 보시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용판 그러면 설명 일단 들읍시다.

○전문위원 박규찬 도로교통공단법은 다 설명이 끝났고요.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소위원장 김용판 그것을 듣고 난 이후에 공단을 다시 검토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제 취지는.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전부개정법률안이 다 합의를 못 이룬다면 여기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를 했으니까 이 관련 사항만 정리하는 걸로 해서 전제로 하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용판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전부개정안을 축조심의까지 갈 이유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전문위원 박규찬 그러니까 오늘 안 할 것을 더 도로교통법……

○이만희 위원 도로교통법 자체를 오늘 다루지 말자는 의견이신가요?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한국도로교통법안 관련 된 도로교통법 조문을 부칙에서만 개정해 주면 전부개정안을 다루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만희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전제로 해서 이걸 통과시키자는 얘기입니까?

○임호선 위원 예.

○이만희 위원 상관없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그러면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오늘 축조심사 안 한다 이 말이지요?

○임호선 위원 예.

○소위원장 김용판 위원님들 논의가 끝나 법률안을 의결할 차례이나 이 제정안은 바로 다음에 논의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해서 처리해야 하므로 안전에 대한 의결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논의가 끝나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4항까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논의할 주제가 많으므로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나눠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규찬 의사일정 제9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홍 의원님 발의 법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성년 보호자 동승 의무를 8세 미만의 어린이·영유아를 태우거나 또는 10인 이상의 어린이·영유아를 태울 때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호자 동승 의무 기준은 그 밑의 표를 보시면 어린이, 영유아는 사실상 어린이에 포함됩니다. 어린이가 타기만 하면 동승 보호자를 반드시 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현행법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8세 미만의 어린이가 타거나 10인 이상이 타는 경우에만 동승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다시 설명하면, 8세 이상의 어린이가 10인 이하로 타게 되면 보호자 동승 의무가 면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영세한 시설의 경우 동승 보호자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보호자 동승 의무 조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 및 운행 과정에서 어린이의 교통안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를 태울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하요금 성년인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2014년 개정에서 법을 도입하였고 그 이후 2020년 법률 개정으로 대상 시설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확보라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와 영세 시설의 동승 보호자 고용 부담 완화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개정안을 입법할 경우에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자 동승 의무가 없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대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완 방법은 현행 제53조의5가 지난 2020년 보호자 동승 대상 시설을 확대하면서 유예기간 동안 운전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유사하게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내용은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하는

8세 이상 어린이를 9인 이하로 태우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조지호 과거 사례를 보면 동승 보호자 없이 어린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이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어서 안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이 되어 왔던 추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그 전에 제가, 여기 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실제 일선에 있으면 민원을 굉장히 받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한 이 법이 결과적으로 안전을 더 해친다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왜냐? 동승자를 1명 두게 되면 최저임금제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학원에서 버스를 운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거의 65% 가까이 버스 운송을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운송을 안 하니까, 걸어가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똑같은 맥락으로 학원가에서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담 때문에 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앞으로 더 많아진다.

그러면 사실 어린이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보호가, 좋은 입법으로 시작된 이 법이 결국은 어린이들에게 해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여러 관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환 위원 오영환 위원입니다.

우선 기존 사고 사례·통계 이런 걸 봐도 현재 이렇게 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이걸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의 요지는 알겠으나 어린이를 탑승시키고 교육시키는 학원에서 동승자 1명이 탑승할 여유가 없을 정도

면 그게 과연 학원으로서의 기능과 영리 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수준인지, 저는 오히려 그런 주장에 설득력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10명 이하의 어린이를 태울 때 동승자를 탑승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의 개정인데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는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다른 위원님들은요?

○임호선 위원 임호선 위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개 군이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저도 경찰청에서 교통국장도 하고 서울청 교통부장도 해서 누구보다도 어린이 안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위원으로서……

그런데 지금 경찰청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냈는데 최근 10년간 통학버스 사망사고 관련 자료를 한번,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유아 수를 보면 10년 전에 45만 명이 태어나다가 10년 정도 지나서 지금 보니까 한 25만 명, 거의 20만 명이 준 거예요,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10살을 기준 하면 20만 명의 영유아가 준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도 겪고 하다 보니까……

통학버스 동승자 이 조항을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정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아니면 별도의 면허를 취득하게끔 해서 어린이 안전을 담보하게끔 함으로써 동승자 탑승 의무를 좀 완화하는 내용, 보완하는 내용 또 지원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의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이 전혀 없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동승기준을 계속 13세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찰청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조지호 지난 10년 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가 총 12건 있었습니다. 그중의 2건은 동승자가 있었고 나머지 10건은 동승자가 없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듯이 대부분의 사고가 동승자가 없을 때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승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8세 정도면 교통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연령은 아니라고 보고 또 8세 정도면 일반 성인과 같은 정도의 위험에 처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능력이 아직 갖추어지기 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3세 정도면 중학교에 입학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신체적인 능력과 그리고 교통 상황을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라고 보기 때문에 13세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임호선 위원 지금 여기 개정안은 13세에서 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차장 조지호 예.

○임호선 위원 그러면 예컨대 저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 수준, 4~6학년은 그렇다고 보면 만 10세 정도 이런 정도까지 완화해 주는 부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경찰청차장 조지호 사실 초등학교의 아이들은 그래도 신체적인 능력이 그리고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고학년이라 하더라도 조금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임호선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인천 지방청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학원 차량 운행대수가 918대였어요. 그런데 22년도, 3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428대.

이거는 물론 경영난 때문에 그렇다고도 보지만 동승 의무로 인해서, 운영비가 1년에 한 11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서 사실은 어린이들이 길거리에 방치되거나 노출돼서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또 다른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지?

○경찰청차장 조지호 그런 지역도 저도 일부 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때는 대단히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맞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 해서 안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입법을 해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안전대책을 보완하는 방법을 경찰청에서 나름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경찰청차장 조지호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 그거는 교육부라든지 이런 관계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동승자가 없어서 난 사고라고 하는 게 동승자를 태웠을 경우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인지 그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례가 있으면 한두 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조지호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자료가 없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저도가끔씩 통학버스를 봄니다마는 동승자가 있으면 문이 열리고 동승자가 먼저 내립니다. 먼저 내리고 아이들이 내리는데 동승자가 없는 경우에는 문이 열리면 아이들의 속성상 그냥 후다닥 내려가면서 나는 사고가 왕왕 있기 때문에 저는 동승자의 의무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런 동승 의무 때문에 부과되어지는 어려움은 교육 당국의 다른 지원을 통해서 좀 보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이 제안한 법안이긴 하지만 그동안 충분히 얘기도 많이들 있었던 내용들 중의 한 가지인데 지금 관련된 정부기관, 교육부·법무부·경찰청 모두가 조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와 어떤 논의가 좀 더 진행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경찰 측에서는 안전을 최우선해야 될 부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이 일면 타당성 있는 것은 맞지만 또 한편으로 아까 말했듯이 입법이 너무 과잉되는 측면 때문에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이 말했듯이 그야말로 어린이에게 더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거든요.

이런 면을 고려해서 교육부에만 돌릴 게 아니라 경찰청 차원에서 그나마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뭘까 고민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위 때도 내가 질의하고 할 테니까.

○경찰청차장 조지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23일 날 당장 행안위 열리니까 그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질의할 거예요.

○경찰청차장 조지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김용판** 예.

○**천준호 위원** 지금 동승 보호자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거든요.

○**소위원장 김용판** 예, 있습니다.

○**천준호 위원** 이해식 의원하고 진선미 의원안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의 논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소위원장 김용판** 저 법안은 워낙 계산에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절대 반대입니다.

○**천준호 위원** 아니, 정부에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할 수 있는데 법안이 언제쯤 논의될 일정을 갖고 계신지 위원장님께 여쭙보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그것은 이걸 만약에 재논의한다고 그러면 경찰청 입장도 받고, 재논의할 때 그렇게 해야 되고 아니라고 그러면 재논의는 다음 기회에 해야 되겠지요. 언제 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천준호 위원** 그래서 그 논의와 같이 병행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그런 과정에서 방치되거나 예를 들면 동승자 없이 약간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발생하는 위험을 저희가 방지하게 되는 모양새가 결과적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 조치에 대한 검토가 같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하여튼 이걸 다음 기회에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전문위원 박규찬** 다음은 김용판 의원님, 김두관 의원님, 임호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3건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신설 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를 제2종 운전면허의 일종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흔히 PM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PM은 운전면허에 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일종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그 구조나

작동 방식이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다르고 위험성이 낮으므로 현행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있어서는 자전거와 유사하게 통행 방법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인형 이동장치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차이를 고려해서 제2종 운전면허의 일종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몇 가지 조문 정리가 필요한 게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취득 가능 연령을 개정안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으로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취득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수정하고 초보운전자 정의라든지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에 대한 무면허운전 벌칙 규정 체계와 자구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의 김용판 의원님 안 제80조제2항제2호의 라목으로 제2종 운전면허의 일종인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전면허 결격사유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포함하는 건 체계·자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11페이지에도 13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했을 경우에 벌칙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면허가 생기기 때문에 그 관련 조항을 자구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한 임차인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즉 임차인은 운행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마는 검토의견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개정안들의 내용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기본법, 즉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토위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을 고려할 때 이 내용들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조지호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면허취득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대여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은,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통행하는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은 법체계상 맞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천준호 위원님.

○천준호 위원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의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사망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경찰청차장 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면허취득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 그런 상황에 대한 관리의 측면에서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경찰청차장 조지호 지금은 사고가 나는데 무면허사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무면허사고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을 낮추면 무면허운전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천준호 위원 지금은 현재 법상으로 어떤 면허를 취득하게 되어 있지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니까?

○경찰청차장 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것도 면허를 취득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것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그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만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런 장치가 안 되어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 아닌가요?

○경찰청차장 조지호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심지어 무면허운전이 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천준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통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산업기반 이것에 대한 정비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PM과 관련된 전체적인 산업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의 기준, 모델 그리고 도로 여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사실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규제방안 그리고 대여업체들에 대한 통제수단 등등?

○경찰청차장 조지호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사용자와 대여자와 관련된 내용이 병행해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천준호 위원 그 상황에서 이 사용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예를 들면 문턱이 낮은 면허를 바로 발급해서 하는 것이 현재 PM 이용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현재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통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하게끔 하고 경고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약간 그 부분의 선후차성에 대한 판단이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청차장 조지호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대여사업자의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정비된 다음에 사용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비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와 관련된 측면만 놓고 본다면 사용자들이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주는 것도 저는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천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이 사고를 더 촉발하고 촉진하는, 쉽게 PM 면허를 취득하게끔 만들어 주면 그것이 사고 위험이 높은 연령층의 이용 폭을 더 확대함으로써, 산업계의 요구일 수는 있겠지만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선행되는 게 맞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 판단을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경찰청차장 조지호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보유 현황이 늘어났다고 해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를 발부한다는 것은 그 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능력 그리고 법과 관련된 내용, 지식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전에 관한 기준은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제가 한 말씀 할게요.

경찰 측에서는 왜 이게 무면허 운전사고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 PM에 대해서 무면허가

많은지……

○**경찰청차장 조지호** 기본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고, 두 번째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취득 연령이 만 18세이기 때문에……

○**천준호 위원** 16세입니다, 16세.

○**경찰청차장 조지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면허를 따지 않고 바로바로 이용하는……

○**소위원장 김용판** 기본적으로 그 원동기는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잖아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높다 해서 그걸 따려면 부모들이 기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따지 않고 그냥 타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타야 되는지, 안전모는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완화하면서 그런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안전에 대해 주지시키기 위해서 문턱을 낮추는 개념이지 다른 개념은 아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입법의 취지예요.

○**김웅 위원** 저도……

○**소위원장 김용판** 예, 김웅 위원님.

○**김웅 위원** 일단은 대여사업자한테 책임을 묻게 하는 건 아마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겁니다. 이게 무슨 자동차 대여하는 것과고는 전혀 다르게 길바닥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법안을 만들어 내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일단은 실제로 이 제도 자체를 보면,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 여성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자동차전용도로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신호체계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얼토당토않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처벌을 강화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불법이 더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는 낮추는 게 오히려 진입 가능성이 좀 더 쉬워지면서 기초적인 교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벌칙 규정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청소년하고 여성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너무 전과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

에 벌칙 규정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면 부칙으로라도 좀 기간을 길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조지호** 이것은 기본적으로 통고처분 사항입니다.

○**김웅 위원** 아, 통고처분요?

○**소위원장 김용판** 예, 다 통고처분이예요.

대여업자에게 자격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지금 무조건 주게 돼 있거든요, 달라고 그러면. 현재는 그렇지요?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강제로.

○**경찰청차장 조지호** 예, 지금은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자격이 없는 원하는 자에게는 못 준다는 그런 근거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인데 이게 입법상으로 충돌된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에 대해서.

○**전문위원 박규찬**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다만’ 다음에 개정안들의 내용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기본법이 현재 국토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등록,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 사항 및 등록취소, 또 국토부장관에 대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의무 부여 해서 지금 왼쪽의 의원님들이 내신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법이 지금 이미 법사위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된 대여사업이라든지 차량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차량에 관해서 국토부에서 소관하듯이 이 부분도 국토부 내지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소관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임호선 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법안 낸 것 중에 속도 부분하고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히 도로교통법에 포함될 내용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기본법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의견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규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이용자에 대한 음주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는 분명히 별도로 논의를 하면 가능한 한 부분입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그쪽,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조에 관한 것은 그게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논의 자체는 가능한데 다만 저희가 법안 준비하면서 일단은 최소한의 논의, 즉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신설하는 부분에서는 합의가 되니까 그 부분을 논의하는 위주로 자료를 작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호선 위원 경찰청 의견 주십시오.

개인형 PM의 최고속도, 사실은 사망사고 같은 것들이 지금 이 속도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음주운전하고도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견 당연히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해야 될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경찰청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차장 조지호 현재 자동차 등의 제한속도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별도의 이 운전면허가 도입된다면 최고속도를 규정하는 것도 법체계상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호선 위원 아니, 16쪽에 보면 현행 도로교통법의 25킬로미터를 20킬로미터로 그다음에 음주운전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규제하는 걸 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의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청차장 조지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천준호 위원님.

○천준호 위원 저는 지금 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제도개선의 방향이 PM과 관련된 면허증을 좀 더 용이하고 손쉽게 취득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제도와 여건이 불비한 상태에서 PM이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망사고 그리고 안전사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오히려 전체적인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PM 장치와 관련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천이십몇 년도인가 이 법이

처음에 개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제가 그때 그 법을 내기도 했고요. 그런 방향에서 왔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업체가 면허를 확인하고 락(lock)을 풀어 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면허증 제시 없이…… 면허증을 제시하는 것은 있지만 거기에 다른 면허증을 또는 다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수신호를 보내도 면허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증해서 그 락을 풀어 줘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편법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어떤 이동장치와 관련된 면허증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PM은 도로 위에서 적정한 이동속도가 몇 km이나 그리고 그 장치는 산업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춰서 출시할 거냐 그리고 대여업체는 몇 km 정도로 그것을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용을 확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2020년도에 제가 그 개정안을 낼 때의 문제의식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최대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했고 도로교통법상 최대속도 규정을 했고 안전모를 착용하게끔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정도의 그리고 음주운전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근거를 만드는 이런 개정안을 냈고 그때 그 법이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부터도 이미 국토위원회 차원에서 PM에 대한 제정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논의가 실제로 되기도 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정부 부처 간에 서로 떠넘기기하고 이것을 어디서 다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최종적으로 아마 국토부 쪽 법안으로 지금 추진이 된 것이지요, 그 PM 관련된 기본법이?

○경찰청차장 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렇게 되면서 이제서야 그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편의보다는 저는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 PM의 특성이 안전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만 해도 바퀴나 이런 것들이 추돌을 했을 때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완충 역할을 그나마 할 수 있지만 PM은 추돌하면 바로 상대 차량이든 전봇대든 벽이든 그 탑승자가 추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 훨씬 취약한 기구이고, 이런 제반 여건이 불비한 상태에서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면허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를 유지하는 게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냅니다.

○소위원장 김용관 어쨌건 이 PM을 우리가 어떤 법하고 관계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고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법안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규찬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병철 의원님 등 다섯 분이 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근거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포함해서 운전면허증의 신분 확인 기능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 말씀드리면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사용 근거 명시를 통해서 모바일운전면허증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면허증을 통한 신분 확인이 가능한 범위와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신분증으로서의 신뢰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법과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전면허확인서비스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확인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성명·사진·주소·운전면허번호 등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조문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다섯 의원님이 내신 법안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을 다 통합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85조의2를 신설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발급 근거와 운전면허증의 신분 확인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운전면허증과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을 하는 근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현재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은 이형석 의원안 제85조의2제4항에서 주소·주민등록번호를 확인 사항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 확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5조는 체계·자구 정리입니다. 운전면허증의 반납 관련 조문인데요, 모바일운전면허증이 도입되므로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전면허증과 모바일운전면허증의 공문서 의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희 의원님 안은 형법 제225조, 229조, 230조 적용에 있어서 운전면허증과 모바일운전면허증은 공문서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고, 강병원 의원님 안은 형법 제225조부터 230조까지의 적용에 있어 운전면허증과 모바일운전면허증을 공문서로 본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 말씀드리면 운전면허증의 공문서 의제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면허증 자체가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별도 의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의 공문서 의제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은 그 자체가 문서가 아니고,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고 문서가 아니므로 공문서로 의제하는 것은 일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모바일운전면허증은 형법 제227조의2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조해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29조 적용도 가능하고 위조·변조와 관련해서는 공전자기록위조·변조 이런 조항들에 의해서 다 규율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도용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두 의원님 안중에서 제230조의 적용에서만 공문서로 의제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문서 의제에 관한 부분인데 형법 제230조의 적용에 있어서 85조의2 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이를 공문서로 본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조지호 전 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전문위원님, 법무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박규찬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기관(법무부) 의견이 되겠습니다. 공문서의 의제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여 일반법인 형법의 구성요건을 확장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운전면허증은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공문서 의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공문서 의제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고 기타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 걸 형법에서 직접 구성요건을 설정하지 않고 타 법에서 공문서가 아닌 것을 공문서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그러면 이 수정의견하고 법무부하고는 어떤 상충관계에 있어요?

○전문위원 박규찬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문서 의제하는 부분은 검토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는 그 대상에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의 공백이 생기니까 최

소한 이 부분만, 그러니까 법무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 입법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웅 위원님.

○김웅 위원 제가 예전에, 작년 국감 때 문제제기를 했던 게 모바일운전면허증 같은 경우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유심칩만 갈아 끼면 타인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작년 국감 때 실연을 했는데 그것 지금 개선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iOS라고 하는 자기 운영체제로만 이렇게 되는 거고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으려면 유일하게 패스(PASS)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건데 통신사들이 지금 거기에 협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유심칩 갈아 끼우고 했을 때도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이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도 이제는 가능하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문서 의제는 어렵겠지만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신분을, 도용을 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처벌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의견을 집어넣고 가면 법사위 같은 데서도 반영을 아마 해 줄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에는 이걸 도용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수정안에 지금 동의한다는 그런 취지지요?

○김웅 위원 예.

○소위원장 김용판 다른 위원님은요?

○임호선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을 의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축조를 할 게 아니라 타인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도용하여 행사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구성요건으로 넣어서 별도로 입법해 버리면, 벌칙조항을 담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웅 위원 그렇지요, 공문서로 의제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소위원장 김용판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전문위원 박규찬 두 분 위원님 말씀, 무리하

게 공문서로 의제하는 것보다 우리 도로교통법에서 타인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도용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규찬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영호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 방호울타리를 어린이보호구역 내 우선 설치 시설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울타리를 어린이보호구역 내 우선적 설치 시설로 명시하는 내용이 일곱 분의 다 공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의원님들께서는 방호울타리를 어린이보호구역 내 우선 설치 시설로 명시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설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강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부분 또 방호울타리 설치 주체를 나열하는 방식 이런 등이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적 설치 시설 중 공동부령에서 규정된 방호울타리를 법률로 상향해서 명시하려는 것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호울타리의 설치 주체, 시설 기준 등 기타 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도로의 부속물로 관리의 통일성 등을 고려해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현행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는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9페이지, 3호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대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 또는 장비의 한 종류로 1호, 2호, 3호 쪽 있는데 3호의2를 신설해서 방호울타리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조지호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방호울타리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호선 위원 그 부분은 앞서 논의된 대로 도로교통법 부칙에 관련 개정된 내용을 담아서 의결을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용판 예, 그렇게 할 거예요.

전문위원, 부칙에 들어가는 것 다 그렇게 인식했지요?

○전문위원 박규찬 예.

○소위원장 김용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경찰공무원 보건의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규찬 소위 자료를 통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찰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법안의 공통적인 내용은 경찰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희 의원님 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라고 하여 의무적 면제를 규정하고 있고 강훈식 의원님 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해서 재량적 규정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경찰병원 신설과 관련해서 현재 경찰병원이 서울 송파구에 1개소만 존재하여 전국에 산재하는 경찰공무원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따라서 경찰병원(분원)의 추가 설립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나 경찰에 대한 충분한 의료 지원으로 경찰 사기를 진작해서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조지호 지금 경찰병원이 서울에 한 군데밖에 없어서 지방에 있는 많은 경찰관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경찰병원(분원)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충분한 의료 지원을 통해서 경찰의 사기 진작을 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문위원 의견과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환 위원 오영환 위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국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라 이렇게 의견을 낸 것은 이해합니다만 단순히 특정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나의 사업으로만 병원 설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또한 밑에 3페이지에 보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항목 중에 ‘사업목적·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런 걸 충분히 제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도에 연구예산 확보해서 연구용역도 이미 실시된 지가 1년이 지났고요. 후보지 선정과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다시 예비타당성조사 이런 거에 발목을 잡혀 버리면 경찰 공무원들, 경찰가족들이……

지금도 송파까지 와서 치료를 받는 걸 포기하는 경찰관들이 사실 굉장히 많지요, 차장님?

○경찰청차장 조지호 그렇습니다.

○오영환 위원 저여도 부산에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이 서울까지 와서, 아니면 특히나 접근성이 안 좋은 지역에서는 더더욱 엄두도 못 내는 그런 환경 속에서 또 균형발전과도 연관되고 좀

더 국가의……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병원 설립이 조속히 필요한 것은 모든 상임위에서, 전반기 국회에서도 그렇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다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경찰청 의견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가는 이 법을 조속히 통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송파잖아요.

○김웅 위원 저희 지역구는 아니고요.

여기 경찰병원이 많이 협소합니다. 지금 많이 협소하고 예전과 달리 여기가 워낙 또 봄비는 곳이 되어서 전국에 있는 공장 환자들을 다 치료를 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거고, 지금 이미 다른 지역에 벌써 땅까지 다 마련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혀 지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예타를 당연히 하고 이런 건 좋겠습니다. 마는 사실 지금까지 예타가 어떤 경우는 면제가 되고 어떤 경우는 면제가 안 되고 이래서 예타를 안 하는 게 특별히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타를 면제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다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시켜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임호선 위원 한 말씀 하시지요.

○임호선 위원 의무적이냐 재량적이냐의 차이만 있는데 예타 면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찰청,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입장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조지호 저희들이 다른 입법례들을 찾아보니까 다 재량적인 사항으로 돼 있어서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웅 위원 법사위를 통과하려면 재량적으로 가는 게 나을 겁니다.

○전문위원 박규찬 위원님들, 6페이지를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만희 의원님 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라고 8조의2 3항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강훈식 의원님 안은 8조의3 2항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항들은 특별한 게 없고 이만희 의원님 안 1항·2항은 사전절차라든지 사전용역 단축하여 이행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1항·2항을 포함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할 것인지 아니면 1항·2항은 생략하고 예비타당성조사만 규정할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 정부 측에서는 재량으로, 면제한다보다는 면제할 수 있다가 더 낫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경찰청차장 조지호 다른 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면제한다 그래서 잘되면 좋기는 좋은데 다 얻으려다 다 놓칠 수도 있기는 있어요.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 맡겨 두시지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박규찬 예, 다른 입법례도 그렇게……

○소위원장 김용판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선 위원 재량으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규찬 그러면 이만희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하되 1항·2항 포함하고 3항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용판 경찰청, 이의……

○오영환 위원 그런데 잠시……

○소위원장 김용판 오영환 위원.

○오영환 위원 이게 지금 8조의2로 발의안은 돼 있는데 별도 조항으로 빼는 게 맞지 않습니까? 8조는 의료지원인데 갑자기 8조의2에다가 사전절차 단축 이행 이런 게 들어가는 건 법체계상 이상한 거 아닙니까?

○김웅 위원 의료지원 안에 경찰병원 있으니까 8조에 들어가는 게 맞고, 8조의3.

○소위원장 김용판 의료지원이잖아요. 제8조가 의료지원이고, 8조의3이에요. 특수건강진단하고 별개예요.

○전문위원 박규찬 오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8조의3으로 이만희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하면서 정리하는 게 기존의 8조의2를 수정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 거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법체계상 문제없다고 보입니까.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찰청 소관 법률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차례이나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김용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하나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오전에 의결한 법안 중에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제85조의2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운전면허소지자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성명,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같은 맥락의 제3항을 보면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에 연계된 운전면허정보를 이용하여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명·사진·운전면허번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주민등록번호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상의 미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고 그러면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항, 5항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수정된 것으로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소방청 소관 안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소방청에서 이일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차장 이일 소방청 차장 이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방청 소관 법률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소위에서 심사되는 소방청 법률안은 9개 법안이 되겠습니다.

모든 법안들이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전문위원들하고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방업무 추진에 중요한 법안들로 판단되니 오늘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김웅 위원 잠깐, 심사 들어가기 전에 차장님한테 한 가지만 현안 비슷하게……

○소위원장 김용판 예, 김웅 위원 말씀하시지요.

○김웅 위원 기사에 나온 인천소방청 징계 건 그 기사 내용이 사실이면, 그런 것 가지고 징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소방관들은 징계를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 파악을 좀 해서 다음번에 보고를 주시고……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소방청차장 이일 지금 현재 노조에서 성명서 발표하고 보고된 내용하고 디테일 면에서는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면상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 나중에 기회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 위원 예, 그러십시오.

○소위원장 김용판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논의 주제가 많으므로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나눠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문근 소위 자료 이것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을 봐 주시면, 이 법안이 좀 생소한 법안이다 보니 간략하게 개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그러니까 이 법의 규율 대상인 건축물 중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 선근(sunken) 구조라고 뒷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법의 규율을 배제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이 법에서 4번 같은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확대하면서 예전에 없던 1000만원의 벌금이 도입되면서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좀 적어 보이는 부분에 대한 규율 대상은 좀 빼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되고요.

두 번째,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이 부분도 예전에 있던 법률체계가 관리 주체라든가 이 부분이 불명확한 부분도 있고 또 내부적인 절차를 외부적으로 이의제기 절차도 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하고 또 조치 요구권 신설하는 내용, 그리고 4번은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없던 1000만 원의 벌금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의 밑부분을 보시면 현행법은 2010년 부산시 주상복합건축물 화재를 계기로 2011년 제정되었지만 당시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긴급히 제정되었다 보니까 피난안전구역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그다음에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부적합에 관한 조치명령과 불이행 시 과태료, 그 밖에 보고·이행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사항만 규정되고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미준수, 유해·위험물질 관리 데이터베이스 미구축 등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법률의 소관 부처는 소방청이지만 대부분의 행정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실제 업무도 지자체 안전관리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 특정소방대상물과 초고층 건

축물 의무사항 비교를 보시면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법이나 화재예방법에 따라 특별한 규제가 있고 그다음에 초고층 건축물도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에 따른 규제를 그대로 다 적용을 받지만 초고층 재난관리법 이 법에 따른 사전재난 영향평가라든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이런 추가적인 규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7쪽 2번,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정의 규정 개정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인 이런 부분,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지하도상가와 연결되거나 건축물 내 문화·집회 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하나 이상이 존재하게 되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되게 되는데 개정안은 현행의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이라는 부분이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1일 수용인원 기준 대신에, 개정안 그 밑의 두 번째 동그라미인데 용도별 바닥면적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000명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 마련 관련해서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 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개요를 보시면, 이 법의 규율 대상에서 지금 말씀드린 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되겠고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개소 수로 보시면 초고층 건축물은 122개 동이 있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346개 동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중에서 지하부 일부가 개방된 지하광장을 통해 지하역사·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구조, 이걸 선큰 구조라고 소방청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구조를 갖추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을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소방청은 향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선큰 구조로 지하 역사·상가와 연결되어 있으나 사실상 별개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현행법의 규제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면제 대상 건축물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바 국민 안전

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아니하도록 객관적이고 엄밀한 기준을 정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8쪽에 보면 대통령령 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0쪽,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정비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에 있는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를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바꾸려는 것인데 현행 규정을 보시면 실시 주체가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데 이것은 재난 상황 시 비상설기구입니다. 그리고 요청·신청 주체도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가 협의를 요청하는 내부 절차로 규정되어 있고 이의제기 절차도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법은 2010년 주상복합 건축물 화재를 계기로 긴급히 제정되어 행정권한을 비상설기구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부여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행정 내부 절차로 진행되던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를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변경하고 건축주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이를 시행하게 하며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등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제2조(정의)에서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안 제7조를 보면 이 법률의 각종 규제 사항에 대한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내용이므로 정의 규정이 해당 조문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고 사전재난영향평가라는 용어는 안 제6조 및 7조에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6조 및 7조에서 해당 조문의 자구 수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간단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정부 측 이야기해 주세요.

○소방청차장 이일 일단은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지금 현재 이게 지하연계 복합건물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이 꽤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명확히 하고 그 명확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그 규정에서 제외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냈는데 전문위원실에서는 타당하다, 다만 구체화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하위법령을 정할 때 엄밀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말씀대로 저희들이

대령 할 때 나름대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사전영향검토 제도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 의견에 동의해 주셨는데, 2조에 정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 재난 제외하고 하는 걸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 역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전문위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얘기지요?

○소방청차장 이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환 위원 차장님, 저희가 초고층 특별법을 통해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을 특별하게 더욱 강화한 이유는 그 건축물들이 보통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 경우가 많고 또 과도한 인명피해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었습니까?

○소방청차장 이일 예, 그렇습니다.

○오영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하와 연결되어 있는 듯 아닌 듯하거나 거리가 좀 있거나 당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피해의 발생 가능성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분리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소방청차장 이일 그것도 한 일부 이유는 되겠습니다.

○오영환 위원 그리고 추가되는 각종 규제로부터 좀 애매해지는 경계선상의 문제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소방청차장 이일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오영환 위원 그런데 선큰 구조라는 게 법적 용어입니까?

○소방청차장 이일 일반적인 건축 용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법에는 이게……

○오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건축법상에도 분류가 따로 되어 있지는 않나요? 뒤에 잘 아시는 분께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건축법상에도 되어 있지 않은 좀 특이한 구조이고 화재 안전성을 우리가 특별히 강화한 이유와 좀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타당하게…… 그것도 많지는 않잖아요, 10여 개소 정도로. 합리적인 개정 방향인 것 같고요.

전문위원님께 여쭙보면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면제 대상 건축물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셨는데 지금 시안으로 나와 있는 이 대통령령의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게 제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시는지, 그 부분은 검토하셨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문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예비 검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법 제정 전후로 약간 개념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제정 이전에 건축된 것 중에서 선큰 구조라고 하는 이런 지하광장 도입된 부분 중에서 3개 건물은 이 법 적용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시행할 때 배제했다고 그러니까, 소방청에서. 그리고 나서 이 법 제정 이후에 신축한 데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다 적용을 해 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걸 예비 검토를 하면서 들어보니 어쨌든 이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건축물 출입구와 지하철 출입구 자체가 완전히 떨어져 있고 이 지하에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연결이 된 부분이 없는 부분만 해주겠다고 하는데 대통령령 규정으로만 보면 사실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곳만 하는 것이냐 하고 구두로 확인은 받았으나 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소방청에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별개인 것처럼 돼 있는 부분만 하겠다고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다만’이라는 부분으로 달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영환 위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만에 하나 규제완화 대상이 됐거나 아니면 되지 않은 곳에서 오히려 자기들도 그렇게 해 달라고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이 부분이 명확지가 않으면 또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 법안심의 과정에서 이 입법의 취지를 여기서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특별히 강화된 화재안전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법의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에서 이 부분을 배제하는 것은 명확히 이런 대통령령 등의 기준을 통해 인명피해 우려가 현저히 적거나 그리고 지하로부터 복합건축물 전체로 화재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 그 부분을 완화하는 거라는 걸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

다.

나머지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권인숙 위원 법이 개정되면 선큰 구조 10개소만 제외되는 것인데 이 건축물들을 제외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가 무엇인가요?

○소방청차장 이일 일단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이 법이 개정될 때 배경이, 2010년도 10월 달에 부산의 우신골드 초고층 건축물이 불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G20이라든가 세계적인 행사 같은 것 할 때이고 급히 이 법에 대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제정하면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담지 못한 채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10년 이상 지나고……

○권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지만 얘기해 달라고요, 효과가 뭘지. 이 10개소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범주에 포함됨으로써 발생하는 불합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10개소 제외하는 것 정도를 여기다 법으로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소방청차장 이일 일단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라고 저희들이 정의를 하는데 지하와 연계돼 있는 그 기준 자체가 제3자가 볼 때 지하와 연계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애매한 기준에서 명확히 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기준에 들어가면……

○권인숙 위원 그러니까 국민들이 얻는 이득이 뭘 건가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에 관한 문제인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아야 되는데, 뭐가 좀 이렇게 과다한 느낌이 있기는 있겠지요. 그렇기는 한데 선큰 구조 10개소를 제외함으로써 국민이 얻게 되는 이득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서요.

○소방청차장 이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을 과다하게 안전하게, 좀 과다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인숙 위원 아니, 과다하게 안전하게 해서 국민들한테 오는 불이익이 뭘데요?

○소방청차장 이일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었다 할지언정 이걸 유지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법적인 비용이라든가 효율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권인숙 위원 이게 그러니까 10개소 제외하자라고 법을 낸 건데 법이 개정되면 향후 건축주들

이 제외 요건에 맞추어서 이 법에 따른 재난 관련 규제들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방청차장 이일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미 돼 있는 건축물 출입구라든가 개방, 바닥면적, 계단의 폭, 이미 건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건물을 헐고 이 기준에 맞추고 이러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권인숙 위원 그러니까 한 10개소, 15개소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법까지 내는 이유가 뭘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국민의 입장에서 뭐가 이득이 되는지. 건축물 관련된 분들은 뭐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설명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소방청차장 이일 일단은 초고층 건축물이 한 346개 동이 있는데요. 선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약 50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한 10개 정도 된다는 거지 이것을 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또 현지 점점 나가 가지고 세밀하게 하면 10개 미만이 될 수도 있고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일단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취지는 10개를 빼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보다 법의 어떤 명확성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라는 거지요?

○소방청차장 이일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저도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 의견과 같은데요.

이게 첫째는 소방청에서 전혀 현황 파악이 안 돼 있는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종합해 보면 몇 개소가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 개념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선큰 구조를 하더라도 지하역사나 상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방청차장 이일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여기 10m 이상이라고 하면 대형 화재의 경우 이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로 꼭 불뿐만 아니라 화학성 연기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직결될 수 있는 위험성은 늘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적용 대상을 정의 규정에서 이렇게 축소시켜서 하는 것은, 구체화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대상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에서 예외를 많이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전하고 정반대로 담기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십시오.

○소방청차장 이일 예.

일단 처음 말씀하신 소방청에서 선큰 구조에 대해서 사실 파악,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선큰 구조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50개 정도 관리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한 10개 정도 된다고 이미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두 번째 우려하시는 부분이, 선큰 구조라는 것은, 지하역사에서 옆의 건물로 들어갈 때 일반적으로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큰 구조는 일반적으로는 지하 쪽인데 선큰은 위가 개방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삼성역 코엑스 들어갈 때 가다 보면 위쪽이 완전히 뿔 뚫려 있는데, 화염이라든가 연기가 보통 뚫려 있지 않으면 그 통로로 지나기 때문에 대피라든가 진압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선큰 구조는 위가 뿔 뚫려 있어 가지고 화염이나 연기가 바로 위로 쉽게 분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선큰 구조가 대피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쉽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준을 정해서 뿔 부분은 빼겠다 이렇게 입법 취지가 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차장님, 이게 지상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지하로는 다 연결이 돼 있는 구조일 수 있는 거잖아요.

○소방청차장 이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살펴보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네 가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규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지하 부분은 선큰 구조, 그러니까 덮고 있는 부분이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개방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가 이렇게 덮여 있으면 이걸 제외가 안 됩니다.

○김웅 위원 차장님, 이게 지금은 한 10개 정도가 빠져나가는 거지만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나면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이런 구조가 좀 더 많

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많아지면 실제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이랬었을 때 인명피해의 가능성이나 이런 위험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보니까 지금 있는 10개에 대해서 대상을 삼는 게 아니고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구조를 좀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같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소방청차장 이일 제가 건축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은 없지만 지금 이 법을 제외하기 위해 가지고 설계 변경해서, 즉 비용이 많이 드는, 계단 면적을 넓힌다든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줄여서까지 하는 부분의 실익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지금 권인숙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한 핵심은 현재 그대로 뒀을 경우하고 이것을 개정했을 경우에 업자, 업체를 제외하고 시민 입장에서 볼 때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약하고, 어쨌건 이걸 개정했을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는 그 말 자체가 자칫하면 여기 맞춰서 소홀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를 표명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소방청차장 이일 잠깐만……

지금 담당 과장이 설명했는데 요지를 보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인데 본인들이 판단할 때는 지하연계가 아닌데 왜 지하연계, 이런 부분에서 민원은 종종 받았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그러니까 지하연계가 아닌데 지하연계가 되기 때문에 법의 과도한 여러 가지 감독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

○소방청차장 이일 예, 제재를 받고 있다, 재판단을 해 달라라는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그래서 그걸 명확히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지요?

○소방청차장 이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오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영환 위원 제가 이 법에, 정부 발의 법이기는 한데 위원님들께서 이 법의 취지와 이 법의 도입에 따른 결과를 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빼 주기 위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7페이지 하단의 사진을 보시면, 그리

고 이런 구조에서 볼 때 제가 현장에 근무했던 소방관으로서 이게, 우리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법을 만들어서 강화한, 그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법으로 명확히 정해서 애매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거지…… 차장님께서 그것은 설명을 좀,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꼬여서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지 저희 위원들이 듣기에는 이걸 빼 주기 위해 법을……

○**김웅 위원** 처음부터 법을 잘못 만들었던 것 아니야.

○**오영환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도 이런 구조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상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단지 우리가 화재안전관리라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 해 놓은 법인데 만에 하나 여기서 이 10개소가 제외되면 소방안전관리가 특별히 더 약화되거나 이게 아니라 또 그 층수 그리고 거기에 출입하는 대상물 안에 있는 특수성에 맞게 특정소방대상물로 강화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차장님?

○**소방청차장 이일** 예, 그것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초고층 건축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법으로 해서 강화한 이유는 이 구조로 인해서 특별히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인데 특별히 위험할 일이 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고 거리가 멀고 개방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빼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그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심의에 반영되는 거지만 차장님께서 설명을 좀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청차장 이일** 예, 저도 아까 말씀드리고 오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민원 제기했다고 이걸 빼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m 이상인 경우는 빼 준다는데 이 10m도 적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하위법령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최소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관**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쨌건 우려는 제기했지만, 그리고 건축주 그런 분들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부 당국에서 법을 명확성 있게 해 주는 것도 우리 책무라 생각합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신문근**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포함사항 정비인데, 주요 내용의 박스를 보시면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포함돼야 될 사항 중에서 현행 대통령령에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 법률로 올리려는 것도 있고 현행 법률에 있던 것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내리기 위해서 삭제하는 내용도 있고 신규 추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박스 밑에 보면 계획수립 의제규정이라 해서 추가되는 것 중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밑의 박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경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시 같이 수립된 것으로 하는 의제규정이 하나 추가돼 있고요.

밑에 검토의견 박스를 보시면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던 것들을 위로 올리는 것들을 저희가 개정안에 표시를 해 드렸고, 그다음에 현행법에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려고 삭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동의드립니다마는 삭제되는 것 중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계획 같은 경우는 윗부분, 20페이지 검토의견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계획은 이 법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면 화재예방법상의 소방계획서를 같이 작성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법률에 명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전기·가스·기계·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종합적 안전관리를 위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에다 규정할 게 아니라 법률에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개정안보다는 현행법이 문제인데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현행 9조 및 시행령 12조는 모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 주체가 재난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매년 전년도 말일까지 수립하도록 하면서도 계획 제출에 대해서는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0조하고 시행령 13조를 보면 초고층 건축물의 신축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만 재난예방계획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초고층 건축물들의 계획은 수립하도록 하는데 제출은 안 해도 되고, 신축하고 용도 변경한 경우만 10조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소방청이나 관계지자체장이 어떤 계획으로 매년 수립됐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도 매년 계획 수립 시 이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5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그래서 10조 제1항을 좀 수정했는데요. 제일 밑에 10조 보면 현행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재난 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이게 시행령이 보면 신축이나 용도변경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수정안에서 보시면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9조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이라고 해서 9조에 따라서 수립하고 그것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는 형태로 해서 수립된 계획에 대해 좀 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은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에서 현행 규정을 보시면 현행은 관리 주체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300만 원의 벌금을 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안전관리자와의 겸직금지 이것은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300만 원, 그다음 교육이수 의무만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여행이나 질병 중이거나 공적인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이것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 원, 그다음에 총괄재난관리자는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리 주체에게 개수·이전·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 이걸 위반했을 경우는 또 과태료 300만 원, 그다음에 조치요구를 이유로 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해임·보수지급거부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를 하고 이걸 또 위반할 때 과태료 500만 원, 그다음에 조치요구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데 조치요구를 안 했을 때 과태료 300만 원, 그다음에 다른 안전관리자와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과태료를 300에서 500만 원으로 상

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조치요구 불이행 시, 그러니까 총괄재난관리자가 조치요구를 했는데 관리주체가 그것을 불이행했을 때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 당국에 통지를 하도록 의무는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과태료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입법례에 따라서 이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소방청차장 이일 일단 20쪽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포함사항 정비 등에 대해 가지고는 전문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두 수용합니다.

그리고 28쪽,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등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실에서 특히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요구하셨는데 그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100%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길요.

○오영환 위원 과태료 규정이 조치요구 불이행 시 행정 당국에 통지 과태료가 3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은 금액을 설명 안 주셔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다른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신문근 다음, 36쪽 되겠습니다.

36쪽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긴급하게 제정되다 보니 법령에 의무는 부과되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가 미비된 부분이 있고, 현행 규정은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이 부적합할 경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300만 원의 과태료만 내게 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세부항목을 보시면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이나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벌금은 1000만 원 이하로 다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종합방재실에 대해서도 각종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또 정보망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 피난안전구역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유해·위험물질의 경우에도 반입·반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지 않은 경우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모든 것의 명령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오른쪽 칸에서 검토의견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0년 부산주상복합건축물 화재사고를 계기로 긴급히 제정되다 보니까 이것이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의무 위반이나 종합방재실 이런 일부에 대해서만 과태료 규정이 있었을 뿐 전체적으로 불이행 시 제재조항이 미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 2023년도 초고층건물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전체 351개소 중에서 60개소 그러니까 17% 정도에서 의무불이행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조치 건수 총 204건 중에서 39건이 조치명령 처분인데 이는 모두 현행법상 유일한 명령 대상인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부적합 건이었고요. 그다음에 기관통보 건으로 분류된 68건은 대부분 소방·전기시설 등 위반이고 시정안내 95건의 경우 제재 규정 미비에 따른 행정지도 건인데 아마도 저희가 파악할 때 전체 조치 건 중에서 개정안 입법 시 신규 조치명령 대상이 되는 8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48건 정도고 나머지는 대부분 소방관계법 사항이나 경미한 지도사항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새로운 벌금이나 이렇게 되더라도 심각한 수준의 저항이라든가 반대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43쪽은 기타 정비사항입니다.

이 법의 용어 중 ‘방화관리’를 ‘소방안전관리’로 변경하고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각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며 사전재난영향평가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48쪽 부칙은 시행일과 각종 경과조치인

데 검토의견 보시면 하위법령 준비, 벌칙 규정 강화에 따른 홍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나머지 경과조치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 이일 36쪽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신 것처럼, 조치 명령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금 1개에서 9개로 확대하는 부분인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저희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43쪽 기타 정비사항 역시 일부 자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다시 재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저희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지막 48쪽 부칙 역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오영환 위원님.

○오영환 위원 오영환 위원입니다.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벌금으로 상향하고 대상을 늘리는 건데요. 지금 38페이지의 2023년도 점검 적발건수 거기에서는 해당된 건 없습니다. 종합방재실 미설치·미운영이나 피난안전구역 미설치·미운영 이렇게 중대한 것들에 대해서 없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 벌금을 1000만 원으로 법적 규정을 하는 건데, 39페이지 아래를 보면 화재예방법에 따른 벌칙에서는 여러 화재안전 관련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을 경우 3년·3000만 원 이런 정도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종합방재실이나 피난안전구역이나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사 법안에서 정하는 수준의 벌칙으로 상향하는 게 맞지 않나, 1000만 원으로 확일적으로 모든 조치명령에 대한 불이행 벌금을 매기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청차장 이일 지금 저희들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과태료도 아닌 벌금으로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 법과

맞추는 식으로 하는 것도 일용 타당성이 있지만 처음 단계이고 그래서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 법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벌금도 시작 단계에서는 결코 약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영환 위원 지금도 이미, 기존에 300만 원 과태료일 때도 다른 대상물들에서 종합방재설이나 피난안전구역은 잘 설치를 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상향하는 건 그만큼 중요해서 강화하려는 거고 규정에 담아 두려는 건데 이렇게 만들 때 타 법과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게 맞지 굳이 이걸 이제서야 벌금을 도입하니까 적게 도입해야 된다 이런 오히려 타당성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제 말이 조금 더 맞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신문근 말씀드리면 일단 초고층법은 아까 말씀드린 화재예방법이나 소방법이 전부 다 규제가 적용되면서 추가적으로 초고층법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마는 말씀하신 형평성에서 보면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영환 위원 그러니까 3년·3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종합방재설이나 피난안전구역에 한해서만큼은?

○임호선 위원 저도 오영환 위원님 취지에 공감을 하는 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초고층은 사후적으로 적용될 소지도 있거든요. 그렇게 봐야지, 이게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하는 수준에서 위반 시 벌금으로만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실제 유사시에, 대형참사가 났는데 보니까 종합방재설이라든지 피난안전구역이라든지 이런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 그런데 그 위반에 대해서 벌금 1000만 원이라 그러면 과연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경중을 둘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위반 시에 벌금 1000만 원 가지고는 집행력을 담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청차장 이일 지금 오영환 위원님과 임호선 위원님께서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타 법률과의 형평성 등 그다음에 초고층 건축물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서 비슷하게 3000만 원 의견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시는 동안 저희 담당 과장하고도 잠깐 해 보니까 3000만 원으로 벌금을 상향해도,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도 별 무리 없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3년 이하의 징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소방청차장 이일 예, 포함해서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갑자기 너무 많이 뛰는 거 아니에요?

○김웅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김용판 김웅 위원님.

○김웅 위원 글썄, 저는 아무튼 행정벌은 비범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행정청이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반했다고 해서 이걸 다 형사처벌을 하는 쪽으로 갈 것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 목적을 쉽게 달성하는 게,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행명령이나 조치명령 이걸 바로 이렇게 범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치명령 중에서도 특별히 문제 되는 것들을 골라서 해야지 이렇게 9개씩이나 갑자기 조치명령 안에 다 집어넣고 이걸 안 지키면 무조건 전과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이것은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김웅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거 추가로 늘려 가지고 갑자기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너무 급격한 상승이네요. 법의 안정성 문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것 관련되는 분들도 반발이 적지 않게 될 겁니다. 소방청은 힘도 좋아지는 것 같고 하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임호선 위원 소방청이 아니라 시장·군수……

○소위원장 김용판 어쨌건 시장·군수로 한다면 하더라도 소방 관련법이니까……

○오영환 위원 이게 단순히 위반했을 때 벌금을 매긴다는 것이 아니라 위반 사안에 대해서 소방당국에서 또 지자체에서 조치명령까지 했는데 그걸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한해서 벌금을 매기는 거라 이게 전혀 강력하다 생각 안 하고요.

3년·3000만 원으로 한다는 것은 종합방재설,

피난안전구역 이렇게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그 두 가지 사안만 그렇게 강화를 하자는 주장이라 타당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문근 현행 29조(벌칙)를 보시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의 출입·점검업무를 거부·기피한 자 그다음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한 경우 이게 1000만 원인데요.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피난안전구역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고 종합방재실 설치를 안 한 경우만을 별도로 올리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환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김웅 위원 일단은 행정청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어긴다고 해서 이렇게 다 범죄화시키는 건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이 조치명령 자체도 바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정도에만 한정을 해야지 이렇게 무슨 계획을 수립·시행 안 했다고 해서 조치 명령해서 안 되면 벌금 때리겠다, 전과자 만들겠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지금 1호부터 9호까지 보면 조치명령의 정도 자체가 균일하지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재실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하고 재난예방계획 수립 안 했다는 것하고 이걸 어떻게 같이 볼 수 있는 것인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한꺼번에 ‘명령할 거고 이거 안 지키면 전부 다 그냥 형사 처벌해서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계속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행정벌 자체는 비범죄화하고 가야 되는 게 지금 선진국 모든 나라의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당황스럽네요.

○소위원장 김용판 정부의 처음 나온 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지켜보고 다시 하도록 하지요.

○오영환 위원 그것도 반대하고 계시는 건데……

○권인숙 위원 예, 그것도 반대하시는 거지요.

○김웅 위원 나는 그것도 반대야.

○소위원장 김용판 반대하면 다수결이야.

○권인숙 위원 과태료 정도로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건가요?

○김웅 위원 이 중에서 몇 가지를 확실하게, 조치명령 중에서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벌금으로 갈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벌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오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를 해 온 상황에서 법 이행의 영향력이 없으니 담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듣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법을 상향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전문위원 말이지요, 아까 전에 피난안전구역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이거 안 하더라도 실효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전문위원 신문근 현행 29조(벌칙)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피난안전구역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그다음에 20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는 것이 현행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점검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이렇게까지가 1000만 원이고.

그다음 벌칙은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오영환 위원 유사 법률에 비추어서도 결코 김웅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높은 벌금이나 규정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종합방재실 관련해서는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전문위원 신문근 종합방재실은 부적합 시에 과태료가 300만 원인데요 그걸 조치명령을 해서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하겠다는……

○소위원장 김용판 그런데 피난안전구역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여기는 위반 시 벌금, 만약 개정안대로 한다면 5년 이하, 3년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신문근 그건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여기에 없고, 피난안전구역은 현행법에 따라서

처벌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소위원장 김용판 아니, 그러니까 개정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 되어 버리면 1000 이하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전문위원 신문근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종합방재실 말씀하셨고요. 40쪽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2호 보시면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에 대해서 바로 벌금이나 과태료나 하지 않고 조치명령을 한 다음에 조치명령 위반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하겠다는 게 정부안이고요. 그 밑에 또 4호를 보시면 같은 종합방재실인데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도 사실 같이 돼 있어서……

○소위원장 김용판 아니, 내 말은 좀 전에 피난 안전구역을 제대로 설치 안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위반 시 벌금 1000만 원 이래 돼 있거든. 그러면 그거하고 둘이 어떻게 충돌되냐 그걸 묻는 거야, 나는.

○전문위원 신문근 중복해서 부과 나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웅 위원 그러면 안 맞는 거지.

○소위원장 김용판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는 5년 이하고 하나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김웅 위원 이것 법무부에서 의견조회 안 왔습니까, 처벌 조항인데?

○소방청차장 이일 이견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이것 너무 모호해서 이 법은 통과 안 되겠습니다.

○권인숙 위원 정리를 다시 해 오라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김용판 다시 정리해서 재심의해야 되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지금. 5년 이하 징역 이래 돼 있다는데 개정하는 안이 벌금 1000만 원 그러면 충돌되고 말이 돼요, 이게?

이것 전체 심의 보류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보류하고 제대로 해서 다시 오세요.

○소방청차장 이일 위원장님, 조금 보완을 드리면요 5000만 원 이하나 5년 이하의 징역은 피난 안전구역 자체를 아예 설치 안 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법률이고 설치되어 있는데 규정에 위배돼 가지고 하는 경우에 이제 또……

○김웅 위원 그건 6호고, 5호.

○소위원장 김용판 개정안에 돼 있잖아요,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명령.

○소방청차장 이일 그러니까 설치나 운영되지 않은 경우는 완전히 설치 안 돼 있는 경우에 5000만 원……

○소위원장 김용판 여기 세부 항목에 돼 있다고,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보세요, 거기에.

○김웅 위원 5호를 보세요, 5호.

○소위원장 김용판 조치명령 위반 시 개정안 벌금 1000만 원.

이것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전체 종합 고려해 가지고 다음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통째로 넘겨요.

다음,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1항까지 위험물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문근 소위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규정 신설 등입니다.

먼저 4개 의원안들이 모두 제조소등에서 흡연 금지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제조소등에서 흡연 시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있으나 이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먼저 금지 대상 장소와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라고 해서 일부 제조소는 제외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고, 최혜영 의원안은 제조소등 내 지정 장소가 아닌 곳이라고 해서 제조소등 내에 흡연 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조소등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말하는데 이것은 위험물을, 허가 최저 기준을 지정수량으로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험물을 상당수 취급하므로 전체 제조소등에 대해서, 시설 전체에 대해서 흡연을 금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명희 의원안이나 강병원 의원안처럼 제조소등에서 흡연 금지 대상 장소를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과태료 금액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는데 현행법은 화재예방 규정 미준수, 제조소등의 사용중지 미신고 등 모든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상한을 500만 원으로 단일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약류 취급소에서 흡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제조소등에는 주유소

외에도 정유사, 석유화학사, 페인트 제조사 등이 포함되어서 휘발유보다 위험성이 큰 화학물질 저장·취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LPG 충전소에서는 흡연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LPG 충전소는 현행 법규상으로는 운전자가 직접 셀프 충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현행법에서 500만 원으로 과태료 상한이 단일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소등에서 흡연했을 때 과태료도 여기에서 500만 원 이하로, 한 호로 추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에 보시면 금연표지 설치 의무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님 안과 조명희 의원님 안이 있는데 금연의무 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님 안은 시정명령이 있는데요. 금연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한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정명령 권한은 제조소등의 허가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했지만 시·도지사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관계인의 흡연 제지 및 종업원 예방교육 의무와 관련해서는 박주민 의원님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종업원 예방교육은 주의를 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연표지 설치 의무로 손님이나 종업원, 수범자의 의무 인지 확보 가능할 것 같고 관계인이 고객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해서 제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다 의무를 넣게 되면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신고포상금이라든가 보완적 방안을 추후에 강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흡연 제지 의무나 예방교육 의무는 적절치 아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일은 다수 개정안처럼 공포 후 6개월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소방청차장 이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영환 위원 전문위원님께서도 수정의견에 네 가지 안 중에 그냥 제조소등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위험물을 지정수량(허가 최저 기준) 이상 취급한다고 해서 시설 전체에 대해서 흡연 금지를 하게 되면, 1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크고 넓은 이런 공장단지에서 흡연구역 하나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종사하는 분들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제조소등이라고 해서 그 내외부가 전체 구역이 모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주유소의 내부에서 담배 피우다, 그런 것 때문에 입법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유소 같은 데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취급소 중에서 이렇게 엄청 큰 공장이라든지 단지라든지 여기에서 종사자들을 위한 흡연구역 하나 마련 못 하면 오히려 불법적으로 어디 숨어서 담배 피우다가 더 볼 크게 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걸 이렇게 제조소등이라고 해서, 그렇게 치면 제조소등이 지금 11만 개 가까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영향이 큰 법이거든요. 이것은 박주민 의원안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제조소등 중에서 좀 제약을, 특정 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최혜영 의원안처럼 지정 장소가 아닌 곳 이게 또 오히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방청차장 이일 의견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용판 소방청 차장님 말씀하세요.

○소방청차장 이일 오영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돼 가지고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말 그대로 주유소가 아니고 제조소등으로 하다 보니까 대단위 단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허가가 나갈 때 대단위 정유시설이라든가 위험물 취급·저장 시설 같은 경우 그 시설별로 허가가 나갑니다. 그래 갖고 어느 단지 내의 위험물 탱크면 위험물별로 시설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금도,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담배를 피울 때는 내부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고 확인해 보니까 옥외 탱크 같은 경우는 저유소 밖에는 도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서 사원 복지를 위해 갖고 금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금연시설 전체가 지정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 이 법에 의해서 지정을 한다면 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허가받은 시설물, 인근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금연 구역을 지정하고 단지 전체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직원들 복지라든가 또는 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는 걸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견을 받았습니다.

○오영환 위원 그런데 금지 대상 장소를 제조소등으로 못을 박아 버리는데 내부적으로 그걸 분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소방청차장 이일 예, 말 그대로 제조소등 하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인데 이 취급하는 부분에서도 취급시설이 있는 그 지역은 금연시설로 정하고 그렇지 않고 사무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권인숙 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거지요. 그런 식의 혼란을 만들지 말자는 거여서 지금 차장님의 설명은 오영환 위원님의 문제의식과, 이게 답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아서, 이 법을 만들 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소방청차장 이일 하여튼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같이 염려해 가지고 검토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권인숙 위원 그러면 검토한 의견이 여기 반영이 돼야 되는 거지요, 문구에.

○소위원장 김용판 전문위원 말이지요, 수정의견대로 하면 이 제조소 위험 되는 데는 통째로 못 한다는 대원칙이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신문근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방청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일부 흡연구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때 저한테 설명할 때는 제조소 내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현재 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서 제가 이렇게 드리기는 한 겁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만약에 부지 내에서 그런 흡연 장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최혜영 의원님 안처럼, 제조소등이지만 위험장소 없는 것을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행정안전부령으로 해서 그 기준을 한 다음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한다면 최혜영 의원안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오영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체 못 하게 되고 담배는 피워야 되고, 몰래 피우다

가 대형 사고 날 우려가 다분히 있다 생각을 해요.

○오영환 위원 최혜영 의원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수정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위원 신문근 예.

○소위원장 김용판 그러면 이것은 자체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나머지는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문근 소위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의 119종합상황실 배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대형재난 발생 시 유무선이나 정보망을 통한 상황정보의 단순 전파만으로는 경찰·소방 상호 간 정확한 상황 인지와 인력 동원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다만 개정안은 시도단위의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소방서의 119종합상황실에도 경찰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종합상황실이 소방본부 소속의 단일 상황관리체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 배치 대상에서 소방서는 제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 조문의 위치를 개정안은 4조의 가지조로 제4조의4로 신설하고 있는데 현행 제4조가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이기 때문에 여기의 제2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부분

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시행일을 특정일로, 2024년 4월 12일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 개정 등을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소방청차장 이일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우선 제가 먼저 해 볼게요.

정부 의견에 행안부에서 부정적인데 행안부 의견과 관련해서 소방청 의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소방청차장 이일 행안부 의견 부정적보다도 저희들 이걸 추진할 때 행안부 쪽에서는, 각 시도에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소방공무원도 파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툼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청 단위, 소방청과 경찰청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해서 이것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 5월 8일에 교환해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법적 규정을 만드는데 행안부 쪽에서 반대의견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잖아요.

오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영환 위원 소방서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런 의견으로 행정안전부 의견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어차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서 소방서는 삭제하고 본부 단위로만 하면 행안부에서 반대하는 논리가 성립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소방청차장 이일 지금 행안부에서 반대한 것은 소방서 단위까지는 아니고 상황실이 없고, 소방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그래요. 기본적으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권인숙 위원님.

○권인숙 위원 경찰·소방 공동대응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냥 기록을 위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안전통신망 활용률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태원·오송 참사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때 무용지물 비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송 참사 당시 책임기관들이 통신망에 접속해 있었어도 또 제대로 된 지시가 안 나왔던 것 아닌가라는 것이어서, 하여튼 통신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라라는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방청차장 이일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다 동의하시는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소방은 경찰에서 나온 것 아시지요?

○소방청차장 이일 예.

○소위원장 김용판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뿌리가 같고 또 역할도 같습니다.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셔야 돼요.

○소방청차장 이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의사일정 제32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문근 소위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과 손실보상공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공제조합의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과 손실보상공제사업은 2014년 12월 법 개정으로 도입된 사업인데 동 개정안에 대한 심사 당시 공제사업의 사고 발생 및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공제조합은 손해보험사와 업무 제휴를 통한 중계판매 형태로만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공제조합은 2009년 설립 이후 2011년 누적 적자 71억 원 등 경영 불안정성을 보이다가 2018년 이후 흑자 전환되어 매년 20억에서 3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영 불안정성으로 인한 사업 제한

필요성이 입법 당시보다 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을 입법하게 된다면 공제조합의 자산 규모가 건설, 전기 등 분야의 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운영 초기의 시행착오도 우려되기 때문에 소방청의 적극적인 감독과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소방청차장 이일 소방청 의견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설립 당시에는 재정이 미약해 가지고 직접 판매라는 부분에 위험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재정이 흑자로 돌아섰고 부담금 같은 걸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정도로 재정이 탄탄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다는 의견에 동감하고요. 특히 다만 조합 초기니까 진행할 때 시행착오가 우려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3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문근 자료 2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단서는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휴직기간을 최장 5년, 기본 3년에 연장 2년인데 최장 5년으로 규정한 것이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그 직무의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인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특별히 배려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형평성 견지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자에게는 봉급·수당이 전액 지급되는데 현재 시·도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지방비로 거의 다 충당이 되고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된 것 중에서 약 4000억 원만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도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지방비로 부담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떤 지방비 부담과 그럼에 따라서 시·도소방공무원 충원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 이일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형평성 취지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염려해 주신, 인건비 충당 부분 지방비 부담과 시·도소방공무원 충원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서 염려해 주셨는데 저희들 검토한바 인건비도 미미하고 6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별도 정원으로 하기 때문에 충원 부분도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인사혁신처 관계자 나왔나요?

○소방청차장 이일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지난번에 경찰 똑같은 것 할 때 인사혁신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안 나온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는 없으시지요?

○오영환 위원 경찰공무원법 할 때 충분히 심의를 하고 의결까지 한 사안인데 인사혁신처가 그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똑같은 의견만 이렇게 내는 건 너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위원장 김용판 인사혁신처는 또 나름대로 고심을 이야기했겠지요. 어쨌건 이것은 경찰 통과시킨 같은 맥락으로 우리 위원들이 다 동의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4항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문근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에 관련 규정이라고 있는 두 번

째 박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보시면 ‘법 전단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박스를 또 보시면, 현행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를 보시면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300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택법에 따른 승인권자는 대지면적으로 나누는데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이하인 경우로 나뉘어지고 이하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승인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택건설사업 등 시장·군수가 승인권자인 경우 이 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포함되지 않아 감리업자 선정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고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현행법의 감리업자 선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시장·군수가 승인권자인 주택건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도 현행법에 따른 감리업자 선정 의무와 절차를 따르도록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부칙 제2조 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승인한 주택건설사업 등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감리업자 재선정 여부 등 시행상의 혼란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 시행 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소방청차장 이일 전문위원 검토해 주신 대로 지금 시장·군수 쪽 승인했을 경우에 감리업자 선정 주체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한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요.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라 개정 적용하고 있는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 주신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5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청 소관 심사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선관위 소관 사항을 심사할 차례이나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을 비롯한 소방청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김용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관위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선관위에서 허철훈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하여 심사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입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문근 소위 자료 2쪽입니다.

이것은 전번에 한 번 심사를 하신 것이고,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한 수당 제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으로 이해되고요.

소위 심사 때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조문별로 각 수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보고를 드린 후에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선관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사실 이 안은 지난번에 저도 조금 부정적 의견을 하고 이랬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재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 위원은 없으시지요?

○김용 위원 저번에 충분히 취지를 밝혔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충분히 이야기했었지요?

그러면 다 동의한 것으로 알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부터 계속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논의할 주제가 여러 개인 만큼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나눠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문근 소위 자료 2쪽입니다.

먼저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작성 의무 신설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을 공직선거후보자로 하여금 발달장애 선거인을 위하여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은 공직선거후보자로 하여금 책자형 선거공보 1종과 접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으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들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선거공보에는 후보자 정보, 선거공약이나 이에 대한 추진계획 외에 비교적 쉬운 내용이 될 수 있는 국정철학이나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지지호소, 투표 참여 권유 등의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정안들은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발달장애인의 알권리 보장 및 정치적 기본권 신장과 함께 법집행 과정에서 후보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선관위규칙 등을 통해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6쪽에 있는 내용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은 투표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는 선거인의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개정안들은 투표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는 선거인의 범위에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나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누구든지 투표를 권유할 수 있으나 누구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투표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정치적 의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시각이나 신체적 장애로 물리적 기표행위를 혼자 할 수 없는 경우 헌법상 비밀투표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투표인의 정치적 의사는 부정투표의 우려에 따라 누구라도 이를 보조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신의 의지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그 정치적 의사에 내용을 불문하고 이를 정당하고 온전한 의사로서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화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선관위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첫 번째,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의무 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선거인의 알권리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쉬운 공보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의 범위가 불명확해서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작하거나 선관위가 안내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거공보와 관련해서 후보자분들께서 일반 세대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시각장애인 세대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또 발달장애인 세대, 이게 도입된다고 하면 발달장애인 세대에는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그러니까 세 가지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가 결정되고 나서 후보자분들께서 등록세를 준비하거나 선거벽보, 선거공보 이런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선관리규칙에 보면 당내 경선은 본선거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20일까지 마쳐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일로 계산하면 선거일 전 40일까지는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기간을 고려할 때 후보자분들께서 이 세 가지를 다 작성해서 준비하시는 부분에는 좀 지장이 있을 것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라고 했을 때 장애인단체 얘기를 들어 보면 그림과 같은 형태로 작성해서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형태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과 같은 형태로 작성을 한다고 하면 일반 선거공보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는 12면으로 되어 있는데 12면보다는 좀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좀 충분한 시

간을 갖고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표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는 선거인의 범위 확대 관련해서 발달장애선거인의 참정권 보장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발달장애선거인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 지금 시각이나 신체장애인은 육안으로 판별이 쉽게 가능한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판단하는 부분이 쉽지 않다는 부분,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 투표보조를 허용하는 경우에 대리투표 발생 위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행 규정하에서도 투표보조인이 사위투표를 하거나 투표에 간섭하는 그러한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보조를 허용하는 경우 대리투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권인숙 위원 차장님, 지금 발달장애인이 투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인숙 위원 어느 나라들인가요? 제가 보기에 인도, 아일랜드, 이집트, 남아공 등의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요? 그 사례들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그 자료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권인숙 위원 왜 말씀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이게 2016년도부터 발달장애인을, 중앙선관위가 안내문 만들고 있고 영상 제작 및 투표과정 설명하기 위해서 안내책자 제공하고 있어서 이게 우리의 관심으로 들어온 지가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데는 모두 다 투표를 해야 되는 거의 강제성을 갖고 있는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의무투표제를 하고 있습니다.

○권인숙 위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이 건 선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력을 막 펼치면서 논쟁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선례를 가지고 얘기하고 우리가 도입 가능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계속 판단해 나가면서 최대한 방향성에 있어서 이것을 빠르게 좀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전혀 이게 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다른 나라 사례 준비가 안 돼 있는 이유는 뭔가요?

전문위원님께서 뭘 하신 게 있나요?

○전문위원 신문근 그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권인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단 가장 궁금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아마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연구가 돼 있는지 제가 숙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인숙 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지요. 오늘 법조문 이거 얘기하자고 지금 소위에 상정돼서, 이런 기회를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게 무슨 무책임한 말씀이세요?

아니,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2016년도까지 투표관리 매뉴얼에는 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 지적·자폐성 장애 포함으로 해서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매뉴얼에 넣었다가 2020년에는 이것을 빼 버렸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권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가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하셨을 때의 기준과 의미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많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요, 이런 문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런 쪽의 선택을 할 때는 뭔가 근거들과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과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얘기들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무책임함은 그러면 어떤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2021년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서도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 인쇄하라 그리고 하여튼, 지금 발달장애 아니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

는 분들의 숫자가 결코 적지 않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권인숙 위원 결코 적지 않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권리구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본인들이 의미화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투표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회가 소화할 것인가 그리고 차별금지라는 개념들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갈 것인가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신을 담고 있는 얘기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할 수가 있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 설명을 먼저 좀, 법안을 세세하게 이게 좋다, 나쁘다를 지금 논의하기 이전에 이 태도에 관한 얘기가 먼저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도 제가 자료를 챙겼습니다만 그 자료까지는 제가 정확히 챙기지 못해서……

○소위원장 김용판 그것은 제가 소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님은 굉장히 무성의한 답변이다. 좀 전에 모두에 얘기했듯이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한 이 규정은 굉장히 민감하고 인권하고 관련되고 현실과 이상이 부딪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선관위에서 이때까지 어떤 자세를 해왔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리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참 안타깝다,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지요.

대충 와서 그냥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게 오히려 후보자에게 부담이 간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논리로 너무 쉽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죄송한데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한국뇌병변장애인협회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선거정보 개선과 관련된 연구용역도 했고 그 결과도 납품을 받았습니다.

○권인숙 위원 그런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금년 5월에 한국뇌병변장애인협회, 대체의사소통을 개

발하는 그런 장애인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림 형태로 표현하는 게 제작하는 게 발달장애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권인숙 위원 그건 2021년에 인권위원회에서도 제시한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그래서 문장이나 글꼴 그다음에 어휘, 표현 이런 것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하는지 그런 부분을 명시를 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는 이렇게 그림 형태로 작성을 하고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을……

○권인숙 위원 아까 그거는 설명을 하신 부분이 고요. 설명을 한 부분인데 지금 이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 나라들에서는 어떤 것이 가능했기에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그림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 하나만 지금 갖고 오신 거잖아요.

○소위원장 김용판 다른 위원님들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남겨 놓으세요.

오영환 위원님.

○오영환 위원 오영환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검토 자료를 보면서 참 당황스러웠는데요.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심도 있는 연구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게 처음 나오고 이제 시작돼서 논의가 시작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과 요구와 그리고 인권위의 판단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연구 결과 이런 것을 차라리 여기에 제출이라도 하시든지 그러셨어야지 그렇게 말로만 설명하시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거에 관한 심의를 어떻게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법과 이 조항과 관련해서 다음번 법안심의까지 선관위 측에서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되는 부분, 그래서 거기에 따라 선관위가 어떤 판단을 내렸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고서 형태로 해서 제출하고 그것을 보고 심의를 이어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소위원장 김용판 잘 알겠습니다.

오영환 위원님의 그 말씀 취지는 잘 아시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소위원장 김용판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선관위 측은 좀 더 진정성이랄까, 진지함이 부족하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채택되고 안 되고 그 이전에 이 의미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노력했던 것 또 외국의 어떤 실정, 우리나라의 실정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대로 잘 보고해 주기를 바라고, 다음 심의할 때는 충분히 입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수 있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다음.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문근 다음, 별도 자료인데 임호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직선거법 소위 자료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사전투표소 설치·운영 요건 추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에 ‘생활권이 읍·면·동에 걸쳐 있어 1개의 사전투표소로는 투표 편의 보장이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전투표소 설치·운영 관련 현행 규정을 보시면 설치·운영 주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기간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인데, 추가 설치·운영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읍·면·동이 설치·폐지·분할·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 그다음에 읍·면·동 관할구역에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개정안은 혁신도시나 신도시 등의 경우 행정구역과 주민들의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사전투표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 설치 요건을 새로 신규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4호, 특히 제148조제1항제4호가 보면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인데 이것을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에 준하는 사유의 경우에만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서 입법 취지에 따른 추가 설치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선거 기준으로 사전투표소 10개소를 추가 설치 시 총 2억 3400만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는데, 사전투표소 설치 편의성 그리고 투표권 보장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선관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혁신도시로 인한 생활권하고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전투표에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투표제도는 선거인의 주소지가 아닌 경우에도 선거일 전 5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어디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여러 읍·면·동에 걸쳐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인의 투표 편의가 저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현행 사전투표소 설치 요건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개정안의 경우에 현행 추가 설치 요건에 준하는 사유인지는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문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위원님들, 좀 좋은 의견 해 주십시오.

○임호선 위원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측에서는, 현행법에 추가 설치 요건 이

게 지금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수가 줄어드는 경우를 1·2호에서 정하고 있고 3호 같은 경우는 지난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4호에 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1·2호에 준하는 경우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사전투표제도가 부재자투표의 취지와 동일한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부재자투표 제도를 발전시킨 게 아니고, 지금 현행 운영되는 것을 보면 사실 관내 사전투표가 한 70% 되고 관외 사전투표는 30%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내 사전투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같은 경우, 특히 저희 충북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허허벌판 논바닥에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딱 경계지역에다가 설치해 놔거든요. 그러니까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다른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유사한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혁신도시 거주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읍·면·동까지 가려면 최소 4~5km씩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도심이라고 주로 현지 분들은 부르시는데 그 원도심하고 혁신도시하고는 전혀 생활권이나 여러 가지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전투표를 하고 싶어도 면사무소 같은 데 가 보면 몇백 미터씩 줄 서 있으니까 사전투표를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전투표소 설치를 미단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그런 곳이 또 많은 텐데 우선 혁신도시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정주여건 개선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계신다, 이런 부분들을 법에 반영하려고 하는 입법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위원님하신 말씀 이해를 했고요. 충북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대구 신서나 전남 나주혁신도시에서도 지금 읍면주민센터는 구도심에 있고 혁신도시로 인해서 택지가 개발되고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새로운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게 됨으로써 구도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까지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투표하는 데 불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봉담읍 같은 경우에도 구도심에 주민센터가 설

치되어 있지만 택지가 개발되고 해서 새로운 지역에 생활권이 형성됨으로써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법에는 선거일 투표는 주소지에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선거일 투표를 하기 어려운 사람은 사전투표 이틀 동안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문에 의하면 읍·면·동마다 1개를 설치하되 추가 설치 요건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지에 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김용 위원님.

○김용 위원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말씀하신 진짜 이 혁신도시들 자체가 양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다 보니까 애매한 곳에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진천에서 근무를 해 봐서, 실제로 도시가 갈려져 있어요. 같은 시설 안에서도 군이 서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국외출장 갔었을 때도 보면 교포들 만나 보면 제일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재외국민들 투표하기 어렵다, 투표소 설치를 늘려 달라 아니면 이동수단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투표가 아니고 사전투표에서 불편하다고 하는 면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것을 다 받아들이어서 설치하다 보면 이게 관리가 다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국민들 같은 경우에 사전투표에 대해서 불신이 엄청 강한 상태고, 아시겠지만 그 불신을 불식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투표소를 또 늘리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우려도 있고 또 관외 사전투표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를 할 때 앞으로는 반영을 잘해서 기술적으로 설치를 잘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이럴 때마다 사전투표소를 계속 다 늘리는 것은 결국은 밑도 끝도 없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오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환 위원 선관위 입장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 들어 보면 현장에서의 그런 얘기들이 있

는 것 같은데 사전투표의 투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에 잘 가지 않고요.

선관위에 물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해야 되는 게 목적인데 투표율을 높이는 게 선관위가 노력해야 되는 방향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투표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선관위의 존재 이유 중의 하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영환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부제자투표도 마찬가지로 그와 별개로 사전투표도 그렇고 이런 제도를 계속 도입하게 된 게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도입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투표율 제고, 투표 편의 제고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투표율 제고와 투표 편의성 제공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견됐으니까 그 부분을 시정하고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는 건데 그렇게 많은 대상 수도 아니고 검토의견에 보면 10개소 뭐 이렇게……

전문위원님, 내년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이 정도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신문근 예, 예산정책처에서 그렇게 추계했습니다.

○오영환 위원 그런데 10개소 정도 추가되는 부분마저도 이렇게 반대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본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 사전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의 투표 편의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10개소 정도 사전투표소를 늘려달라는 것이 그렇게 과도한 요구이고 주장입니까?

저는 잘 공감이 가지 않고, 이 부분은 몇 달 남지 않은 선거를 앞두고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빠르게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물론 오영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고 또 발의한 임호선 위원님도 일리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투표는 본투표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사전투표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김웅 위원 지적대로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보는 분들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전투표가 계속해서 확대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국민의 시각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 관점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선관위 의견과 같이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다른 안을 하도록 하지요.

○권인숙 위원 저도 한마디는 하고 싶은데, 사전투표제도가 도입이 된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권인숙 위원 도입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천과 여기의 특이한, 굉장히 불편한 그런 곳들에 대해서 한 10개소 정도를 늘린다 이런 것이 이렇게까지……

사전투표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분들의 문제 때문에 못 한다라든가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제도가 도입됐으면 그 제도가 잘 살려지고 국민들 편의를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태도를 지켜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무조건 설치도 아니고 해당 선관위가 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남겨 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불합리하다’ 싶은 곳들에 대해서 정도의 어떤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은 사전투표라는 것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것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그런 상식적 변화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차장님한테 물은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위원님 말씀 이해를 했고요. 저희는 아까 혁신도시나 신도시 또는 봉담읍과 같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경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인숙 위원 예.

○임호선 위원 끝으로 저도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법에 만들어진다면 하더라도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결정할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용 가능성도 없고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하고는 별개로 그야말로 주민 불편 해소, 선거에 대한 편의성 제고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어떤 제도에 대한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열린 마음으로 주민 불편 해소 또 특히 혁신도시 같은 경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인숙 위원 그런데 여기서 결정할 일인 것 같은데요. 김웅 위원과 김용판 위원님이 상식선에서의 판단을 내려 주실 문제인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용판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르고……

○김웅 위원 이게 불편하다고 해서 다 만들어 주면……

○권인숙 위원 아니, 다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니까.

○오영환 위원 10개만 하는 건데……

○권인숙 위원 10개 아니어도 되고……

○소위원장 김용판 이것은 좀 더 고민해야 될……

○권인숙 위원 현실적으로 어떤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몇 가지 기준이 마치 금과옥조같이 그것은 무조건 그 기준으로만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영환 위원 새로운 제도 도입도 아니고.

○권인숙 위원 사전투표를 아예 없애자는 법이 나왔으면 그것은 그 자체로 논의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있는 선에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그 제안 속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문제 하나를 넣어서 그걸 또 선관위에서 해결하자, 너희가 그것을 좀 판단해서 해 봐라라고 하는 것 정도의 조항이 하나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웅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새로 설치를 할 게 아니고 사전투표소 위치를 잘 조정하면 되는 거겠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릴 거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행정구역상으로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마다 다 만들어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나 혁신도시 같은 경

우는 만들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안 만들어 줘야 되는 근거가 됩니까? 예를 들면 재외국민투표소 같은 경우에도 불편하다는데 거기도 당연히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야기한 것 중에 일단은 사전투표가 이렇게 됐지만 사실 사전투표가 본투표보다도 낱짜도 이틀이나 더 많은 상황에서 그것도 불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별도로 사전투표소를 또 만들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투표권을 넓혀 줘야 된다, 그러면 1년 365일 선거를 해도 되는 거지요.

○오영환 위원 그것은 과장된 주장이지.

○김웅 위원 어느 정도 선은 맞춰 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위원장 김용판 위원님들 정리하겠습니다.

○권인숙 위원 그것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소위원장 김용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권인숙 위원 뭐 타당한 면이 있는데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변경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을 좀 더 살려 내고 선관위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선관위에 자기 제정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요소를 반영해서 그래도 여기에 1개소씩 있어야 된다고든가 이런 정도의 기준 외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위원장 김용판 선관위는 아까 입장 충분히 밝혔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이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부터 계속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신문근 B4 용지로 넓게 출력된 소위 자료 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여론조사 관련되는 소위 자료가 되겠습니다.

선거여론조사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관련한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분을 보시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직무에 교육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전봉민

의원님과 이형석 의원님 안을 보시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분석전문인력 교육을 추가하려는 내용이고, 검토의견을 보시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직무에 선거여론조사기관 분석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교육 실시 주체가 되겠는데 김용판 위원장님, 전봉민 의원님, 이형석 의원님께서 중앙 또는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셨고 조해진 의원님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셨는데 선거여론조사기관 상당수가 서울에 소재하고 7개 시도에는 등록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 또는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규칙으로 위임하면 필요하다면 화상교육이나 방문교육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김용판 위원장님, 전봉민 의원님, 이형석 의원님 안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교육 대상은 전봉민 의원님과 이형석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선거여론조사 분석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으로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상근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시장·여론조사업은 자유업종입니다. 따라서 등록이나 이런 것이 없지만 선거여론조사를 하려면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체 조사 중에서 선거여론조사 비중은 약 7%에 해당하는데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분석전문인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석전문인력을 교육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거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 안에서는 분석전문인력이 직접 받고 만약에 안 받으면 분석전문인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형태가 돼 있는데 분석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하는 의무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부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수정의견에 그 부분을 넣어 드렸습니다.

그다음 교육 실시 주기와 관련해서는 김용판 위원장님 안처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요.

교육 위탁 근거도 의원님 안과 같이, 현재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5쪽의 참고자료를 보시다시피 선거여론

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이 전체 88개소가 됩니다. 향후 만약 이게 추가로 늘어난다거나 또는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가 있을 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교육 미이수 시 제재 조치로 김용판 위원장님 안처럼 분석전문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석전문인력이 이직이나 새로 신규 채용이나 퇴직하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적절하게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외에 교육 결과를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전봉민 의원안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선관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저희가 지금 현재도 매년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선거여론조사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거여론조사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선거여론조사 품질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분석전문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지요.

○오영환 위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문근 다음은 12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거여론조사의 등록취소 요건 추가 및 등록취소 후 등록 제한기간 강화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밑의 부분의 검토의견, 등록취소 사유 추가 관련해서 현행법 관련되는 일반적인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에 선거범죄 조사에 준하는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위반사항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 등을 불이행한 때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법 위반사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주저할 우려가 있고 고발을 하더라도 위반행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로 고발·기소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고발·기소되더라도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은 유지됩니다. 이렇게 공표·보도가 제한되니까 영업정지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등록 기관으로 유지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하고 여론조사업 자체는 자유업이지만 선거여론조사를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제도적 특이성 때문에 이렇게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고발하는 요건이 다소 강하게 되어 있다 보니 결국 단속·규제 부실로 이어져서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훼손과 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설치 이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취소 건수가 2023년 5월의 1건이 전부이고 행정제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시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등록취소 사유를 법에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선관위 차원의 검토 및 의견 제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윗부분의 현행 규정을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그다음에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그다음에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 등록취소 사유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을 보시면 등록취소 사유를 추가 또는 재등록 제한기간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이종배·이명수 의원님 안과 조해진·윤준병 의원님 안이 있고요. 그 외 개정안들은 재등록 제한기간만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이 이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시장 그리고 여론조사업이 자유업이고 선거여론조사의 경우에만 등록제로 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고발된 경우에 영업정지처럼 고발된 그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한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특히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등록을 취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배·이명수 의원안은 등록취소 사유를 추가하는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것은 동일하기는 하지만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2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도 등록취소 사유로 추가하면서 재등록 제한기간을 세분화하고 있는데 징역형 또는 2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4년, 2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2년 동안 재등록 기간을 제한하고요.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1년 동안 재등록을 제한합니다.

그다음에 조해진 의원님 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3회 이상 위탁한 경우에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시고, 윤준병 의원님 안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의 등록증 교부를 받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나 제108조제12항을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렇게 등록취소 사유를 규정하면서 3년의 재등록 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기는 한데 13쪽 검토보고, 먼저 이종배·이명수 의원님 안은 선거여론조사 규정 위반으로 200만 원 이상 과태료 부과 시 취소사유를 규정하는 것인데 행정 목적 달성에 대한 침해가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의 경우까지 등록취소 사유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조해진 의원님 안은 아까 위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선거여론조사를 3회 이상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취소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인데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제3자가 전부 또는 일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한 경우라면 각종제한규정 위반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여심위는 일부 실시한 경우 단순 경고에 그친 사례가 있으므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제3자가 일부 실시한 경우도 공표·보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조해진 의원님 안처럼 사실 선거여론조사를 제3자에게 위탁하더라도 위탁받은 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것은 공표·보도해서는 안 되고 처벌되어야 되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해진 의원님 안은 그 안 자체를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이렇게 일부 실시한 경우도 당연히 안 된다는 것을 현행 규정에 명시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윤준병 의원님 안은 등록증 교부를 받지 않고 여론조사 실시 및 제108조제12항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과태료 부과 시 취소사유를 규정하려는 건데 등록 신청에 대해서 등록 수리를 하면 이미 등록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록증 교부 자체는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108조제12항의 위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과태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14페이지를 보시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위반행위별 제재 기준이라고 그래서 현행법에 있는 벌칙 규정들을 다 나열을 해 드렸는데 한두 개가 아니라 처벌 규정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것을 유형화해서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현행 규정처럼 고발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있고 또 이렇게 되면 불이익한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이라든가 의견 제시라는 절차 없이 법원의 선고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취소 사유를 별도로 추가할지 여부는 선관위에서 연구라든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재등록 제한기간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취소되더라도 재등록 기간 제한이 없는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입법례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할 경우 재등록이나 재허가 기간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재등록 제한기간에 대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13쪽, 재등록 제한기간 강화 관련해서 이종배·이명수 의원안은 벌금 및 과태료 액수에 따라 재등록 제한기간을 세분화하는데 현행법의 등록취소 규정이 일반적인 입법례와 다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법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면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재등록 제한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는 4년마다 실시되어 2년을 단위로 번갈아 실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위법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등록이 취소되면 다음 공직선거까지 선거여론조사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3년이나 또는 5년 중에서 등록 제한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선관위 측은 의견을 말하는데 전문위원회에 동의한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절대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선관위 입장 명확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등록취소 사유 추가 부분에 있어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법위반행위가 있을 때 적시 제재 조치 취하는 부분, 등록 취소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를 조치를 할 때 중대한 것은 고발 조치하거나 10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경미한 사안은 경고나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다 등록취소를 한다고 하면 경고·시정조치 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위반행위에 대해서 등록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고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 위반행위로 인해서 고발·기소되더라도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계속 등록을 유지한다는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행법 108조 제12항에 고발되거나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유지되지만 선거여론조사한 것을 공표·보도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종배·이명수 의원님 부분에서 200만 원 이상 과태료 부과받은 경우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만 원 이상 과태료 부과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또 이게 뒤집어지거나 감액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해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제삼자가 선거여론조사를 일부 실시한 경우도 공표·보도 제한 대상에 포함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재등록 제한기간 강화와 관련해서 현행은 1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2년부터 10년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 주기를 고려할 때 5년 정도 하면 3개 선거 정도에 아마 제한을 받게 되고, 3년 정도 하면 2개 선거 정도는 선거여론조사를 공표해서 보도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또는 5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위원님들 일단 질의 먼저 해주십시오.

김웅 위원님.

○김웅 위원 저는 일단 선거여론조사가 점점 선거의 자유 자체를 침해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발이나 기소됐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공표·보도를 제한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 사유나 재등록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충분히 여론조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봤었을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선관위 의견처럼 과태료 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미한 사안일 때도 나오는 거라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선거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서 공격하는 수단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해진 의원안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재등록 제한기간도 제가 예전에 할 때 보니까 너무 짧아서 선거 때 되면 나와서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은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안으로 봤었을 때는 이형석 의원안처럼 3년·

3년·5년이나 3년·5년·5년 이런 식으로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오영환 위원 저도 김용 위원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등록취소 사유를 이렇게 너무 경미한 것까지 해 놓는 것은 사실상 아닌 것 같고요. 조해진 의원안 정도가 합리적인 것 같고, 재등록 제한기간 강화도 저도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기간은 한 5년 정도로 해야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동의합니다.

○권인숙 위원 궁금해서 묻는 건데 등록이 어려운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지금 저희가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서 등록 요건을 강화시켰습니다. 분석전문인력이 전에는 1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두도록 그렇게……

○권인숙 위원 그러니까 대표자 바꾸고 이러면 그냥 등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3명 그렇게 분석 인원 이런 조항에 부합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권인숙 위원 그런데 사기업이라는 게 얼마든지 자기 변신이 가능한 영역이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인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면 등록취소 현황이 2023년에 1건 있었고 2018년부터 하나도 없었기는 했네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그것은 선거여론조사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등록 취소된 경우가 1건입니다.

○권인숙 위원 다른 경우로는 얼마나 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지금 등록 취소된 기관 수가 총 40개인데요. 하나는 폐업에 의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38개가 등록취소 신청에 의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1개가 아까 말씀드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취소가 된 겁니다.

○임호선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소위원장 김용판 임호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호선 위원 재등록 제한기간을 늘리는 사유도 그렇고요. 조해진 의원님처럼 3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5년이면 여론조사 그 기관만 놓고 보면 사실은 거의 폐업에 준하는 수준이고 등록취소 사유를 경미한 범죄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자유업이다 보면 재등록 제한기간에 걸렸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 명의로 이게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것처럼 또 새로운 여론조사기관으로 다시 등록을 해서 과연 그런 부분들을 우회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막을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는 대책이 없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그러면 지금 등록취소 사유로는 조해진 의원안 이것을 선택하고 재등록 제한기간 강화는 조해진 의원안대로 3년·1년·3년 이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전문위원 신문근 제가 잠시 줌……

○소위원장 김용판 전문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복잡하다.

○전문위원 신문근 예.

조문대비표 18쪽을 한번 봐 주시면, 조해진 의원님 안은, 그러니까 아까 앞부분의 내용이 좀 복잡하다 보니 이렇기는 한데 현행 있는 등록취소 사유에다가 등록취소 다른 것을 한번 저희도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만 새로운 등록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현행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나 선거여론조사 관련해서 죄를 범해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이게 사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이 법에 있는 선거여론과 관련한 벌칙을 다 포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다 등록취소 요건을 규정하려고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해진 의원님 안은, 먼저 조해진 의원님 안부터 말씀드리면 제삼자에게 위탁을 세 번 하면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자는 건데 등록취소

사유로 그것을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한 데다가 위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 일부, 그러니까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기관에 위탁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심위가 고발하지 않고 그냥 경고에만 그친 사례들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해진 의원님 안을 조금 내용을, 취지를 고려한다면 108조 12항 제2호의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이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또는 3호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실시한’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일부 실시한 경우’를 포함하게 되면, 다른 등록하지 아니한 기관에다가 일부를 위탁한 경우도 이 법을 위반한 것이고 고발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게 되면, 고발을 받아 가지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취소되는 구조로 가는 것이 현행법 규정을 볼 때 이렇게 맞아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드린 것은 조해진 의원안 그 자체를 등록취소 사유로 넣는 게 아니라 현행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보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재등록 제한기간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입법례를 보시면 사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가 제일 먼저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약하게 할 것이 아니라 1호하고 2호는 사실 동일하게 봐서 기간은 같이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위법한 경우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분석전문인력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경우라면 추후에 요건을 갖추면 다시 재등록하는 데 특별한 기간 제한을 두실 필요가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에 그렇다면 1호와 3호에 대해서 3년 또는 5년을 하시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보면, 그래서 18쪽에 보시면 제8조의9 여기서 1호 또는 3호, 그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그리고 3호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리고 2호는 빼고 이것에 대해서 공히 3년 또는 5년인데 이 부분은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해진 의원님 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현행 규정을 보완하게 되

면 그것이 등록취소 요건에 같이 녹아들어 가어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환 위원 5년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용판 5년?

선관위에서 한번 종합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 의견이 같고요. 아까 조해진 의원님 발의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등록취소 사유에는 추가하지 않지만 108조 12항 3호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일부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면 일부 실시한 경우도 투표 마감시간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제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등록 제한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3년으로 할 것인지 5년으로 할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거 주기를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전문위원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일단 하지 말자는 거지요?

○전문위원 신문근 예.

○소위원장 김용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3년에 이의 없는 것 같고, 나머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3년이나 5년이나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임호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3년으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용판 3년?

○김웅 위원 갑자기 1년에서 5년은 너무 많이 뛰는 것 같은 생각이……

○소위원장 김용판 그러면 3년으로 하시지요.

○권인숙 위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용판 그러면 이 조해진 의원안을 취지를 살려 가지고 전문위원이 잘 정리하도록 하세요.

○전문위원 신문근 예. 그러면 결과는 1호 및 3호에 대해서 3년, 재등록 기간은 같이 3년으로 하고 조해진 의원님 안은 108조에서 일부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을 2호·3호에다가 반영하

는 수정의견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그렇게 정리하세요.

○전문위원 신문근 예.

○소위원장 김용판 다음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 신문근 다음은 19쪽 되겠습니다.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로 인한 고발·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사실 공개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등록취소 사유 등의 확인 의무 관련해서는 이형석 의원님께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의 등록취소 사유 및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확인·조치 시행을 명시하자고 하신 내용은 사실 이것이 당연한 직무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 공개 주체와 관련해서는 의원님 안들과 같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중앙과 시·도에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주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공개 대상 관련해서는 전봉민 의원님과 박성민 의원님 안과 같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로 고발되거나 기소된 경우도 공개하고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특히 옆의 비고란을 보시면 현행법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를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면서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고발되거나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는 공표·보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견 반드시 공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개 내용인데 공개 내용은 박성민 의원님 안처럼 고발·기소 사실 또는 과태료 부과 사실 및 선거여론조사기관명과 대표자 성명 이렇게 다 공개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현재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할 때 공개하는 사항에 보면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연월일도 함께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같이 공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는 선관위규칙으로 위임하되 박성민 의원님께서 명시하신 사항은 다 공개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공개 방법은, 공개 주체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

원회로 중앙 및 시·도이기는 하지만 공개되는 장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2쪽 부칙(시행일 등)을 보시면 검토의견에서 개정안들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 3개월, 6개월 이렇게 차등하고 있는데 22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에 실시되는 점, 관련 규칙 개정 및 법 시행 준비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등록취소 후 등록 제한 기간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이 취소된 경우부터, 그다음에 고발·기소 또는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사실 공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고발·기소되거나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 안을 보면 교육 관련해서도 경과조치를 두기는 하고 있으나 지금 교육제도 관련해서는 없고 설명회 정도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법 시행일을 생각해 보면 내년 초 정도에는 시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는 부칙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선관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고 피 중대 선거여론조사 범죄의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하거나 10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기소 또는 10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한해서 공개하자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부분 여기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법안입니다.

○김웅 위원 전문위원이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54항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오늘 법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관위 사무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논의한 안건들은 23일 목요일 9시 30분에 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권인숙	김용판	김웅	오영환
이만희	임호선	천준호	최기상

○청가 위원(1인)

용혜인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찬
전문위원	신문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경찰청차장	조지호
소방청차장	이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무차장	허철훈
------	-----